0

• 2020 •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1-

.

C/O/N/T/E/N/T/S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

제4편 사후조사 _ 65	
1. 개요 ···································	68 71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_ 99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06 08 12 13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 불 처리 절차 _ 12:	2
게 이번 기업적인파의 교사 첫 건글시니 글시 _ 12.	3
1. 개요 ···································	25 26
1. 개요 ···································	25 26
1. 개요 ···································	25 26
1. 개요 ···································	25 26 27 67 90 92 93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p.3)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생계지원이 종료된 때, 의료지원은 퇴원한 때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 가정폭력, 질병 및 부상등 위기사유를 달리하는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있으나 다른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종전 위기사유로 인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¹⁾ 이내에는 지원 불가²⁾ 1) 단, 시군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경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 2) 의료지원 예외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예시) 생계지원이 종료된 때, 의료지원은 퇴원한 때 다른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¹¹ 이내에는 지원 불가²¹ - (예시) 실직으로 '20.1.1.부터 생계지원을 3개월간 수급한 경우 그 지원기간은 '20.1.1.~3.31.이며 '20.4.1.~6.30.는 긴급지원 요청불가²¹ 1) 단, 시군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인정할 경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 2) 의료지원 예외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p.5)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u>화재</u>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③ 교 ④ 기 ⑤ 돌 또	한전된 때 한경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남쪽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한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당시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한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한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소득	배산 참고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u>1,280천원,</u> I준 <u>3,460천원</u>) 이하	- 소득	대산 참고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u>1,318천원,</u> 기준 <u>3,562천원</u>) 이하
	종 류	지 원금 액	종 류	지원금액
	생계	<u>1,195.9천원</u> (4인기준)	생계	<u>1,230.0천원</u> (4인기준)
	의료	300만원 이내	의료	300만원 이내
	주거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주거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복지 시설 이용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복지 시설 이용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교육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교육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원/월 - 해산비(<u>60만원</u>)·장제비(<u>75만원</u>)·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긴급지원 체계 (p.9)	가. 시·군·구 (1) 시장·군수·구청장 (가) 긴급지원기관(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 긴급지원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긴급지원 기관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우선으로 함. 다만,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등이 실거주 지와 지원요청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기관이 되며, 이 경우 타 지자체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지자체에서 반드시 협조		(가) : - 긴 - 긴 - 거	군·구 장·군수·구청장 긴급지원기관(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l급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칙 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 ·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소삭제〉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등이 실거주지와 지원 요청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기관이 되며, 이 경우 타 지자체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은 반드시 협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주민등록이 말소에 준하는 상태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의 시장· 군수·구청장 ※ 이 경우 실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등록표 상의 거주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은 반드시 협조
	(나) 역 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신 설〉	(나) 역 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 법적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u>긴급복지지원법</u>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당해 시·군·구 소속 공무원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당해 시·군·구 소속 공무원
	※「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2일 부터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특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등에 대해서 추후 별도 공문을 통보 예정 (「긴급복지지원법」 '19.6.12.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	<u>〈삭 제〉</u> <u>〈삭 제〉</u>
	<u>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u> < <u>〈신 설〉</u> < <u>〈신 설〉</u>	- 복지 관련 교육훈련 :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관련 교육(통합교육과정3))" 또는 "긴급 지원 및 복지관련 교육(개별교육과정4))"을 담당공무원 지정 전 3년 내에 10시간 이상이수. 단, 불가피한 경우 발령 후 3개월 내에 필수 이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5043호(19.10.1.) 참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석 신설〉 〈주석 신설〉	4) (통합교육과정)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복지 입문" 또는 개별 지자체 유사교육 5) (개별교육과정) 우리부 또는 인력개발원 등의 긴급지원 관련 교육과 기초생활보장·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실무교육 동시 이수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p.11)	② 시·군·구의 기존 위원회 활용 ③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처리(단, 사후조사 결과가 지원결정 사항과 동일하거나 지원이 명백히 적정한 경우,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심의 종료 가능), 본 위원회에서 반대 의결한 경우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신 설〉	② 시·군·구의 기존 위원회 활용 ③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는 협의체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처리(단, 사후조사결과가 지원결정 사항과 동일하거나 지원이 명백히 적정한 경우,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심의 종료 가능), 본 위원회에서 반대 의결한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 긴급복지 지원 증가 추세, 심사의 전문성 및 신속성확보 등을 고려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필요
지원요청 또는 신고 (p.14)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⁵⁾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역 기행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p.21 참조) 5) 〈삭 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긴급지원 대상자의 발굴 (p.21)	법」에 의한 교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중시자 -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강과 그 종사자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강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강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개활센터의 강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개활센터의 강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긴급복지지원법」'19.6.12. 시행》 제7조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1. (생략) ④~⑥ (생략)	〈삭 제〉
위기상황의 정의 (p.24)	가. 위기상황의 정의(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④ 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	가. 위기상황의 정의(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④ 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p.25)	(마) <u>화재</u>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생략〉 〈신 설〉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대규모 자연재해 등 발생에 따른 특별조치 시항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 - (상담소의 역할) ①긴급지원 신청 안내문 배포 및 상담 ①발굴된 대상자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연계 ②상담건수 및 특이사항 등 보고 - (상담인력) 읍·면·동 담당자 또는 시·군·구 긴급복지 업무 경력자 2~3인 배치 ※ 시·군·구 긴급복지 업무 현직자는 지원 결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며 시·도에서는 원활한운영을 위해 광역 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파견·지원 - (상담소 설치구역)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밀집장소에 설치하며 대상구역 및 설치 개소수등은 현장 상황을 적의 판단하여 조치 - (기타) 복지부·시·도·시·군·구·상담소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담건수,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금액 등 일일 보고실시 ○ 피해지역 내 긴급지원 홍보 강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현수막, 자체 보도자료 배포,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 - 필요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통장 등을 활용 하여 피해가구 방문 상담 실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극지원 -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 적용이 우선되나, 긴급한 생계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고 후 적정성 심사 실시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차후 재해구호법 등 적용시 긴급복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함을 필히 안내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개별가구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
(p.27)	〈신 설〉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만족)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또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발생)를 한 경우. 이 경우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단, 화재 등실질적인 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때로부터 3개월)이내인 경우※ 다만 화재 등실질적인 영업곤란이 발생하였으나,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화재피해및 영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불가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경우 - 지원연장 •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아님
(p.27)	<u>〈신 설〉</u>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지원대상 • 가구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 날이 1개월 경과(①) 12개월 이내(②) 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③)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확인되는 급여가(최저임금 × 60시간) 이상 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구직 및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p.28)	<u>(바)</u> 〈생 략〉 〈이 동〉	<u>(아)</u> 〈현행과 같음〉
(p.28)	[위기사유 한시적 확대 운영'19.1.1~'19.6.30.] - 〈생 략〉	<u>〈삭 제〉</u>
(p.28)	(<u>사</u>)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①~②〈생 략〉 ③~④〈삭 제〉 ⑤~⑥〈이 동〉	(<u>사</u>)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①~②〈현행과 같음〉 ③~④〈현행 ⑤~⑥과 같음〉
(p.29)	〈신설〉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하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 (11~2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뿐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지자체 또는 민관협력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통해 발굴된 일체의 대상자 중 관계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사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 이외에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관계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 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사※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 담당부서에서 발굴하는 가구도 포함 - 지원방법 •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3호 긴급지원의뢰서(p.161)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추천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시행 • 추천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원결정 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급여 및 부기급여 지원 ※ 담당부서에서 이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p.30)	<u>⑥ 〈신 설〉</u>	 ⑥ 통합시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방법 ●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3호 긴급지원의뢰서(p.161)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추천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시행 ● 추천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원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급여 및 부기급여지원 ※ 담당부서에서 이미 현장조사 등을 통해지원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30)	① 〈신 설〉	①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추천기관: 「지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 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부서"에서 추천 가능 - 지원방법 •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3호 긴급지원의뢰서(p.161)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추천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시행 • 추천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원결정 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급여 및 부기급여 지원 ※ 담당부서에서 이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다. 지원단위 (p.36)	(2) 가구의 범위 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원칙〈생략〉 ○ 예외 - 가구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u>생계</u> 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되, 해당 가구원을 제외하여 긴급 생계지원 <u>〈신 설〉</u>	<u>급여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u> 수급을 받고

구분		변경	경 전					변경	병 후		
가구의 범위 (p.37)	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재외국민 <u>〈신 설〉</u>				목2 개5 개 <u>9</u> 보호	국민 재외: 적으로 등록히 외국민 호가	국민 중 - 입국 / - 거나, 주 - 기주자기 필요하다	국내에 3 시 신고 신등록0 사 실제	받아 말: 생계: 상·군:	이상 거주할 주민등록을 소되지 않은 가 곤란하여 수·구청장이	
	l		제3	3편	긴급지원의	실시					
생계지원 (p.42)	1. 생계지원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의 생계지원 - 주소득자가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다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 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경우 - 주소 치료 • 다 급	방법 독자기의 생 독자기 하는 라는 만, 경	가 중한 J계지원 가 입원: 경우도 중한 질병	하지 않. 가능 또는 부	고 지	부상을 당한 가가 등에서 로 인한 실업 ・받고 있는
(p.42)	라. 지원기준				(원/월)	라. 지원기	준				(원/월)
		1인 41,900	2인 <u>752,</u> 6		3인 <u>973,800</u>	가구 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4,900	2인 <u>774,7</u>		3인 1,002,400
	4인 1,194,900		<u>인</u> 5,900	1	6인 ,636,900	4인 1,230,0	00		인 7,500	1	6인 685,0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 7인 이	 다라 정인	 :급으:		* 가 구구 성	원의 원이 원이	수에 때 7인 이성	나라 정액	급으로	으 <u>୦,,,,,,,,,,,,,,,,,,,,,,,,,,,,,,,,,,,,</u>
의료지원 (p.43)	가. 지원대상자 ④ <u>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u> 원칙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대상7 또는 :	료급 가 됨 중환지	·여수급지 릴 수 없음 실 이용	음. 다만,	예외· <u></u> 사유	로 긴급지원 적으로 수술 로 의료비를 원 가능	
(p.45)	○ 의료비용 중 상한액 적용 - 국민건강보 - 요양급여 7 • 건강보험	용 험법시행 시원 상한	령~ 액		에 대해 지원 등 2-3분위)	상한액 - 국민건 - 요양급	적용 강보 여 지	험법시행 원 상한	령~ 액		에 대해 지원 : 2-3분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에 따른 금액으로 소득분위 1분위 <u>81만원</u> , 2-3분위 <u>102만원</u> , 4-5분위 <u>153만원</u> 은 정액, 기타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u>통계청 '18.12월</u> <u>말 발표</u>)을 반영한 금액임을 참고 • 의료급여 1종: 매30일간 5만원 • 의료급여 2종: <u>연간 80만원</u>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에 따른 금액으로 소득분위 1분위 81만원, 2-3분위 101만원, 4-5분위 152만원은 정액, 기타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19.12월 말 발표)을 반영한 금액임을 참고 • 의료급여 1종: 매30일간 5만원 • 의료급여 2종: 연간 80만원(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
(p.48)	긴급복지사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 1,280,256원, 4인기준 3,460,152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20백만원 범위 내에서 예비급여, 선별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액 50% 지원 지원신청: 건강보험공단(재난적의료비 담당) 퇴원 후 180일 이내 〈신 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p.49)	3. 주거지원 나. 방법 및 절차 ○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다만,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시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신 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u>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u> , ① 임시 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 다만,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해산비 (p.56)	○ 1인당 <u>600천원</u>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 1	해산비 시원기준 인당 <u>700천원</u>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400천원 지급)
장제비 (p.57)		장제비 시원기준 인당 <u>800천원</u> 지급
	제4편 사후조사	
사후조사 (p.67)	①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① 소득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때문	재산 참고기준] 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가구	
	원/월 <u>1,280,256</u> <u>2,179,896</u> <u>2,820,024</u> 원/ 4인 5인 6인 7인 4인	
	3,460,152 4,100,280 4,740,408 5,380,53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40,128원씩 ※ 8인	.881 <u>4,220,828</u> <u>4,879,776</u> <u>5,542,286</u>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u>662,510원</u> 씩 (8인 가구 <u>6,204,796원</u>)
(p.68)	○ 긴급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u>조사</u> ○ 집 - 다만,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 1개월 이내에 <u>호</u> 완료하지 않을 수 있음 - 대	사후조사 시기 긴급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u>1회에</u> 한하여 조사 다만,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을 수 있음
소득조사 (p.78)	②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② 보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이와 유사한 금품 이 소신 설〉 - 청 ※ 3	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I와 유사한 금품 성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6월말까지 적용 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2020년 7월 예정) 되는 시점부터는 미적용(가구의 소득으로 산정)
재산조사 (p.82)	지급통장 사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동시충족) 예외적으로 ※ 가족(배우	등 객관적 증빙 인정 가능	자지급통장 사본 J이 가능한 경우
(p.93)	① 일상생활 유 ² 〈 <u>2019</u>	지를 위한 생활준 년 금융재산 공 ⁷		① 일상생활 유 ² 〈 <u>2020</u>	지를 위한 생활준 년 금융재산 공 ⁷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기준중위소득	<u>1,757,194</u>	2,991,980
	공제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수준)	1,110,000	1,889,000	공제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수준)	1,142,000	1,945,00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760,032	<u>4,613,536</u>	5,467,040	3,870,577	4,749,174	5,627,771
	2,444,000	2,999,000	3,554,000	2,516,000	3,087,000	3,658,000
	6인가구	7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320,544	<u>7,174,048</u>		6,506,368	<u>7,389,715</u>	
	4,108,000	<u>4,663,000</u>		4,229,000	<u>4,803,000</u>	
	* 8인 이상 가구의 증가(8인 가구		마다 <u>555,000원</u> 씩	* 8인 이상 가구의 증가(8인 가구		마다 <u>575,000원</u> 씩
(p.94)	⟨2019	<u>9년</u> 일시금 공저	금액〉 <u>(단위 : 원)</u>	⟨202	<u>0년</u> 일시금 공저	금액〉 <u>(단위 : 원)</u>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u>1,707,008</u>	2,906,528	기준중위소득	<u>1,757,194</u>	2,991,980
	공제금액 (기준 중위소득 55% 수준)	<u>939,000</u>	1,599,000	공제금액 (기준 중위소득 55% 수준)	<u>966,000</u>	<u>1,646,000</u>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760,032	<u>4,613,536</u>	<u>5,467,040</u>	3,870,577	4,749,174	<u>5,627,771</u>
	<u>2,068,000</u>	<u>2,537,000</u>	<u>3,007,000</u>	2,129,000	<u>2,612,000</u>	3,095,000
	6인가구	7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320,544	<u>7,174,048</u>		<u>6,506,368</u>	<u>7,389,715</u>	
	<u>3,476,000</u>	<u>3,946,000</u>		3,579,000	<u>4,064,000</u>	
	* 8인 이상 가구의 증가(8인 가구		- 마다 <u>469,000원</u> 씩	* 8인 이상 가구의 증가(8인 가구		마다 <u>486,000원</u> 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5편 긴급지원대상기	사의 관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p.101)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u>긴급복지지원심의회 한시적 활성화</u> <u>방안 안내(19.1.1~'19.6.30.)</u> 〈생 략〉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긴급복지지원심위원회 <u>활성화 방안</u> 〈현행과 같음〉
사후연계 (p.118)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 로의 연계 (3)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 ○ 〈생 략〉 〈신 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 로의 연계 (3)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 ○〈현행과 같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한부모 가족 중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안내 노력※ 공통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구(조손가구 포함)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안내 - 지원대상 (공통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지 않을 것 (개별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지 않을 것 (개별요건〉 - 「고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것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사고, 질병, 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정신적·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20만원(원칙) - 지원 기간: 9개월 ※ 위기상황 지속될 경우 지원 종료 후 3개월 연장 가능 - 문의사항: 양육비이행관리원 ☎ 02-3479-5514
	제7편 서식	
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6. 29.〉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6. 12.〉
	[서식 4호]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8.6.20〉	[서식 4호]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4.1〉
	[서식 6호의 2] 공통서식 별지 2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8.3.19〉	[서식 6호의 2] 공통서식 별지 2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4.1⟩
	[서식 8호]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6.20〉	[서식 8호]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4.1〉
	[서식 9호]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위기발생사유 〈생 략〉	[서식 9호]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위기발생사유 〈현행화〉
	[서식10호] 현장확인서 <u>위기발생사유〈생 략〉</u> 유의사항 1~2. 〈생 략〉 <u>〈신 설〉</u>	[서식10호] 현장확인서 위기발생사유〈현행화〉 유의사항 1~2.〈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긴급 복지지원법」 제1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서식13호] 긴급지원의뢰서 신청구분 : 신규, 연장 유의사항 1~2. 〈생 략〉 〈신 설〉	[서식13호] 긴급지원의뢰서 신청구분 : 노숙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유의사항 1~2. 〈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합니다. 나.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 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제 1 편

긴급지원의 개요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3
2. 긴급지원의 종류	6
3. 긴급지원의 실효성 혹	학보 6
4. 긴급지원체계	8
5 기근지원이 적차	13

00000000

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가, 선지원 후처리 워칙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추가 1일 이내 - 총 48시간 이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나. 단기 지원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단기지워: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의 경우 추가 2개월
 -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시설이용·연료비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생계지원이 종료된 때, 의료지원은 퇴원한 때
- 다른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¹⁾ 이내에는 지원불가²⁾

¹⁾ 단, 시군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경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

²⁾ 의료지원 예외

- (예시) 실직으로 '20.1.1.부터 생계지원을 3개월간 수급한 경우 그 지원기간은 '20.1.1.~3.31.이며 '20.4.1~6.30.는 긴급지원요청 불가

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에 연계하도록 하며.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 하여 우선 긴급지원 가능

라.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 다만, 의료·교육지원 등의 경우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개인단위 지원)

급지원의

개 요

기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지워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5. <u>국사들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회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u>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u>1,318천원</u>, 4인기준 <u>3,562천원</u>) 이하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워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상 형 주급(급전 · 현물		생계	o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u>1,230.0천원</u> (4인기준)	6회
	위기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급여	주거	o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90.3원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지원 부기 급여 ②	부가 급여	교육	o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원/월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1회 (연료비 6회)	
연계지원 등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 상담 등 기타 지원 ○ 아이크 나타나 경우 중국에 조르면 변화기의 기노	횟수제한 없음	

-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수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기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 (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 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2 긴급지원의 종류

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나.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3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가. 지원금품에 대한 압류 등 금지(법 제18조)

- 압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음
 - 긴급지원수급계좌③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³⁾ 긴급지원수급계좌(법제9조의2)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제1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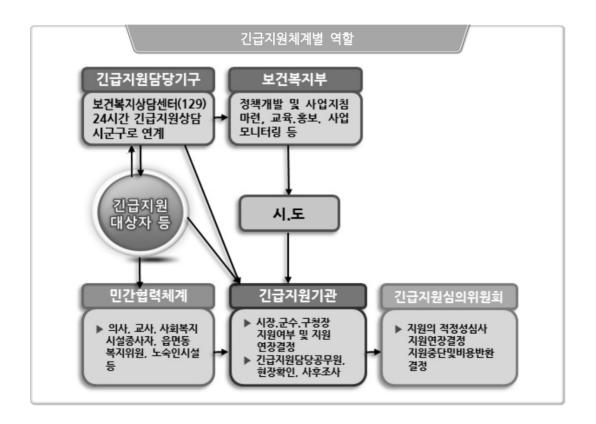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제7항, 제19조)

-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긴급지원의 조사과정에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긴급지원체계

- (긴급지원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접수·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지원 (사후조사 등)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요청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등 심의·의결
- (긴급지원 담당기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상담(접수)·정보제공 및 기관·단체 등 연계
- (민간협력체계): 의사 등 의료기관종사자, 교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 대상자 조기발굴(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



제1편

가. 시·군·구

(1) 시장·군수·구청장

(가) 긴급지원기관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 긴급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칙
-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
 - ※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등이 실거주지와 지원요청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기관이 되며, 이 경우 타 지자체에서 현장확인이 <u>필요하다고 판단될</u>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은 반드시 협조
- <u>주민등록이 말소에 준하는 상태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주소지와</u>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 ※ <u>이 경우 실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표 상의 거주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u>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은 반드시 협조

(나) 역 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 법적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
 - ※ <u>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u> 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u>법</u>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당해 시·군·구 소속 공무원
- 복지 관련 교육훈련 :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관련 교육(통합교육과정⁴⁾)" 또는 "긴급지원 및 복지관련 교육(개별교육과정⁵⁾)"을 담당공무원 지정 전 3년 내에 10시간 이상 이수. 단, 불가피한 경우 발령 후 3개월 내에 필수 이수
 -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5043호('19.10.1.) 참조

^{4) (}통합교육과정)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복지 입문" 또는 개별 지자체 유사교육

^{5) &}lt;u>(개별교육과정) 우리부 또는 인력개발원 등의 긴급지원 관련 교육과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u> 실무교육 동시 이수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 사무에 전담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배치
- ② 지원요청 또는 신고의 접수: 읍·면·동 협조
- ③ 현장확인 및 긴급지원 실시: 읍·면·동 협조
 - * 읍면동 담당공무워 권한 확대(행복e음: 지원대상자선정관리→현장조사내역등록)
- ④ 사후조사 실시
- ⑤ 지원연장 결정(의료지원, 교육지원 제외)
- 계속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연장 가능

(다) 기 타

- ① 이의신청서 시·도 송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② 긴급지원기관의 조정 요청
-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 (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① 긴급지원연장 결정
- ②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③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 결정
- ④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나) 구 성

-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 임명 또는 위촉 주체: 위원장(시장·군수·구청장)
- 위원 정수: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 위워 자격
- ⑦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i)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6)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라)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 ② 또는 ◎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함(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3항)
- 위원 임기 : 2년 이상 3년 이하
 - ※ 동 지침 시행이후 신규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함

② 시·군·구의 기존 위원회 활용

-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u>생활보장위원회 또는 일정</u> <u>조건을 충족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는 협의체</u>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 또한,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처리(단, 사후조사 결과가 지원결정 사항과 동일하거나 지원이 명백히 적정한 경우,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심의 종료 가능), 본 위원회에서 반대 의결한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 ※ <u>긴급복지 지원 증가 추세, 심사의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u>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필요

⁶⁾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③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⑦ 개최시기:수시
 - 매월 1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고 신속한 적정성 심의를 통해 추가보호 등을 결정
- ①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마) 수당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시·도

(1) 긴급지원기관 조정(긴급복지지원법 제6조2)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 군·구의 예산확보 현황,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 지원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새로이 긴급지원기관이 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긴급지원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 지원결정, 지원중단 또는 비용반환명령에 불복하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긴급지원 담당기구

(1) 보건복지상담센터(129)(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가) 기능

- 긴급지원의 담당기구로서 365일 24시간 상담팀 운영

개

요

제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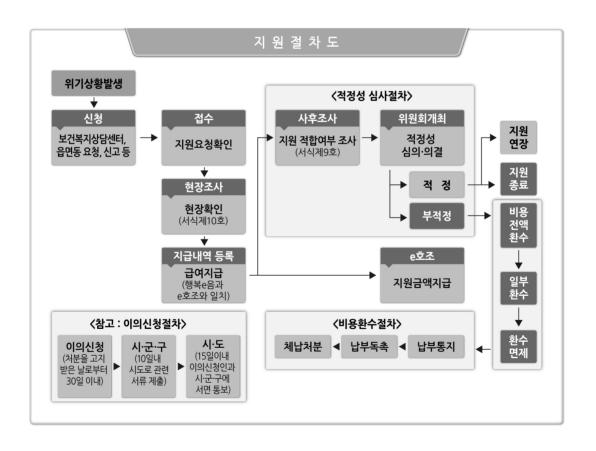
(나) 긴급지원의 처리과정

① 상담센터를 통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 \rightarrow ② 상담센터(상담사)는 시장·군수·구청장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연계 \rightarrow ③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 절차 처리과정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상담센터에 통보

(다) 시·군·구(긴급지원담당공무원)와의 관계

-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연계된 건은 지원현황 정보를 상담센터에 통보

5 긴급지원의 절차



가.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⑦ 지원요청
 -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팩스·e-mail 등으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신청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주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필요

(나)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제1호부터 <u>제11호</u> 해당하는 사람<u>(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u> 선정 p.21 참조)

○ 신고 접수

- 읍·면·동,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관련기관기에 연계
- 시·군·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나. 현장확인

(1) 목적

-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 또는 발견된 사람에 대한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⁷⁾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성폭력·가정 폭력 등 여성긴급상담(1366), 119, 경찰관서(폭력, 학대 사건은 우선적으로 경찰서로 연계) 등

개

(2) 현장확인 주체

- 직접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 건을 연계 받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등 포함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

(3) 현장확인 시기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및 보건복지상담 센터의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⁸⁾ 현장 확인 실시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신청/등록

- (변경신청) 상담·신청의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요청 사항을 최초 신청하고, '변경신청' 기능을 통해 추가 급여책정 등 처리
- (직권등록) 접수등록 및 처리완료 된 조사표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직권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조치

⁸⁾ 야간(18시~익일 9시) 또는 공휴일에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으로부터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연계 받은 경우에는 우선 긴급지원대상자와 전화 등을 통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 및 현장확인 등 실시

[※] 행복e음 중단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긴급지원을 이관한 날짜와 행복e음으로 전송된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이관한 날짜를 긴급지원 요청일로 본다.

ex. 보건복지상담센터 이관일(12.17) → 행복e음 전송(12.19) = 긴급지원 요청일(12.17)

행복e음 기급복지 조사표 처리기능 개선

- 기능개선 내용
- (변경신청) 가구구성 정보 등 旣 등록된 조사표 활용을 통한 주급여 보장 추가책정 등 변경신청 기능 구현
- (직거등록) 부가급여 추가책정 등 旣 등록 된 조사내용의 보정을 위한 직권등록 기능 구현
- 사용방법

내 용	기 능
① 주급여 (생계, 주거, 사회시설이용, 의료) 보장 추가 ② 이전 조사 지원종료 시 (이전 조사표 가구정보 등 활용 위함) ③ 가구단위 급여(생계, 주거 등) 가구원 변경	변경신청
① 지원중인 조사표 * 지원종료 인 경우 지원연장으로 변경 이후 직권등록 가능 ② 부가급여(교육, 연료, 장제, 해산, 전기요금) 추가 ③ 개인급여(의료, 교육) 가구원 변경 ④ 조사(현장조사, 사후조사) 내용 보정 ⑤ 지급내역 보정	직권등록

다. 지원결정 및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 결정·실시

라. 사후조사

(1) 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2) 사후조사 주체 및 시기(시행령 제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⁹⁾에 사후조사를 완료하여야 함

⁹⁾ 사후조사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연장 결정시 부적정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지원 연장 필요시 지원종료 3일전까지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후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변경신청) 변경신청에 의한 보장결정 후 최초 지원 시 조사
- (전 입) 전입처리 후 즉시조사 ※ 단, 1개월 이내 회신된 공적자료가 있는 경우, 기 조사정보(타조사의뢰 활용)로 갈음

마. 적정성 심사

(1) 목적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2) 적정성 심사 주체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3) 적정성 심사 대상

- 최초 실시한 1개월(의료지원, 교육지원 1회 포함) 지원
- 위원회 심사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추후 여타 공적자료 등을 통해 위기 상황 혹은 재산소득 상 변동이 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4) 심사완료 시기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
- 특히,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후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부적정 및 부적정 시 환수/징수제외 결정 노력

바. 지원 연장결정

(1) 목적

-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2) 연장결정 주체 및 연장 기간(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가) 1차(지원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 지원의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 (나) 2차(추가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지원은 3개월의 범위, 주거지원은 9개월의 범위, 의료지원은 1회, 교육지원은 1회(주거지원 3회 범위) 추가 연장

(3) 지원연장결정 시기(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가) 1차(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종료 3일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연장이 결정된 경우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통지

(나) 2차(추가연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기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 → ② 위원회는 지원기간 종료 3일전까지(의료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 자에게 통지

사.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 드러난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제 **2** 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21
-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24

000000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가. 발굴조사

(1) 정기 발굴조사(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 시도 및 시군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나. 활용자원

(1) 발굴 협력·신고 의무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10)의 종사자11)
- 「유아교육법」¹²⁾, 「초·중등교육법」¹³⁾ 및 「고등교육법」¹⁴⁾에 의한 교원, <u>직원, 산학겸임</u> 교사. 강사

¹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¹¹⁾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 모두를 의미

^{1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유치원 원장, 원감 및 교사

^{13)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19조의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장, 교감 및 교사

^{14)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14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15)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u>「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u>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기존 응급지원관련 종사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경찰관서, 119 응급구조대 등

(3)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

- 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 학교사회복지사,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복지 도우미, 가스 검침원, 종교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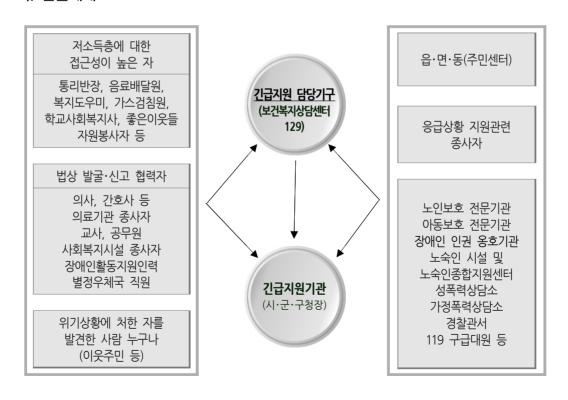
¹⁵⁾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체국 직원 포함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1) 지자체 차원

-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 적극적인 홍보
 - 공무수행차량에 스티커 부착, 유선방송(자막), 시정뉴스, 지역소식지, 전광판, 통화 연결음 서비스 등 활용
 - 지방의사회, 약사회 등 각종 직능단체, 협회, 자원봉사조직, 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
 -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자에 대하여는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라. 발굴체계도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가. 위기상황의 정의(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 ② 사망
 - ③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④ 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① 의료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② 생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主所得者)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①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②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 ③ 장애인학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① 가구구성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②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③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등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지원 가능
 - 예시 가정폭력에 의해 남아(男兒)를 데리고 시설로 들어갔으나,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울 때에는 주거지원 가능, 퇴소 후에도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지원 복합 지원 가능
- (마) <u>화재 또는 자연재해</u>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공매·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대규모 자연재해 등 발생에 따른 특별조치 사항

- ※ <u>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u>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o 긴급복지지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
- <u>(상담소의 역할) ①긴급지원 신청 안내문 배포 및 상담 ①발굴된 대상자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연계</u> ②상담건수 및 특이사항 등 보고
- (상담인<u>력) 읍·면·동 담당자 또는 시·군·구 긴급복지 업무 경력자 2~3인 배치</u>
 - ※ <u>시·군·구 긴급복지 업무 현직자는 지원 결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며 시·도에서는 원활한 운영을</u> 위해 광역 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파견·지원
- <u>(상담소 설치구역)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설치하며 대상구역 및 설치 개소수 등은 현장</u> 상황을 적의 판단하여 조치
- <u>(기타) 복지부-시·도·시·군·구-상담소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담건수,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금액</u> 등 일일 보고 실시
- ㅇ 피해지역 내 긴급지원 홍보 강화
- 현수막, 자체 보도자료 배포,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
- 필요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통장 등을 활용하여 피해가구 방문 상담 실시
- o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극지원
- <u>재해구호법 등 관련법 적용이 우선되나,긴급한 생계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고 후 적정성 심사 실시</u>
 - ※ <u>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차후 재해구호법 등 적용 시 긴급복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함을 필히 안내</u>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개별가구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16)
 - ※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해지 통고 내용증명 등이 도달되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포함
-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위와 유사한 사유로 현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¹⁶⁾ 현장확인을 통해 세입자가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원 \rightarrow 임차계약서, 임차료 계좌입금(현금 포함) 여부 등 확인

- ※ 임차료를 연체한 사실은 있으나, 연체한 임차료를 납부할 만한 수준의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다만,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해지 통고 내용증명 등이 도달되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재해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의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만족)
- <u>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또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발생)를 한 경우. 이 경우</u>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 <u>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단, 화재 등</u> 실질적인 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 <u>다만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이 발생하였으나,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화재피해 및 영업에 대한</u>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u>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u>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아님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워대상
 - <u>가구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u> 경우
 - <u>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 날이 1개월 경과(①) 12개월 이내(②) 이고, 실직 전 3개월</u> 이상(③)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 확인되는 급여가(최저임금 x 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구직 및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기 위기사유의 기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시행하여야 함
 - ※ (위기상황의 기준)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지자체별 긴급지원사업 예산(국비+지방비) 사용 한도 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이 부문에 과도하게 편중 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① 주소득자와 이호한 때
-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워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 (긴급지원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즉,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출소자의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 자녀 등은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지원방법
 - 초기 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담당자와 연계하여 기존 제도를 우선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 선지원 가능
 - 기초수급심사 자료를 통한 가족과의 관계단절 여부 참고 (부양의무자와의 현실적인 관계단절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가능)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목적
 - 해당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초기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서식 13호 긴급지원 의뢰서)
 -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 지원방법
 -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등 현물지원 원칙
 - 신청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는 대상자의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상담 연계(서식 13호 긴급지원 의뢰서)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워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 (11월~12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뿐 아니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지자체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발굴된 일체의 대상자 중 관계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사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 이외에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사 **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 담당부서에서 발굴하는 가구도 포함
 - 지원방법
 - <u>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13호</u> 긴급지원의뢰서(p.161)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추천
 -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시행

- <u>추천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원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급여 및</u> 부가급여 지원
 - ※ <u>담당부서에서 이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u> 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방법
- <u>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3호</u> 긴급지원의뢰서(p.161)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추천
 -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시행
- <u>추천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원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급여 및</u> 부가급여 지원
 - ※ <u>담당부서에서 이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u> 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⑦ 지살한 자의 유족, 지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지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u>추천기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u>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 ※ <u>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찿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u> 부서"에서 추천 가능
- 지원방법
 - <u>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3호</u> 긴급지원의뢰서(p.161)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추천
 -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시행
 - <u>추천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원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급여 및</u> 부가급여 지원
 - ※ <u>담당부서에서 이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u> 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위기상황에 따른 운영지침

구 분	요 건	참고자료			
	* 선지원 시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곤란 상황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를 필수 증빙으로 활용하며, 추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참고자료로 운영				
휴폐업	• 휴폐업확인, 휴폐업한지 1개월 경과 12개월(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 휴폐업증명원 또는 화재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По	1년 이상 영업 실질적 지속여부간이사업자 여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중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고용보험 가입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실직	 실직여부 실업한지 1개월경과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신청가능한지 (확인 가능한 서류로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 실직 전 3개월 이상,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여부 (확인되는 급여가 최저임금×60시간이면 인정) ※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직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출근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			
출소	• 출소여부 • 기초수급심사자료 참고하여 가족관계 확인	• 출소증명서			
노숙	 종합지원센터 등 상담여부 확인 의뢰서 바탕으로 상담 지원결정 지원 결정 후 사후관리(주거지원 후 문제발생시 퇴거) 	• 긴급지원 의뢰서			
가정 폭력	• 가정폭력 여부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 등 상담 내역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가정폭력사실 확인 확인자료 등 생태·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되회신이 늦어질 경우 위기상황을고려하여 선지원 할 수 있음			

(2)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3) 위기상황 발생시점에 따른 구분

- (가)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연계
- 다만, 위기사유 발생시점에 긴급지원보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공무원 등에게 연계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장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선 긴급지원 가능

나. 현장확인(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1) 현장확인시 점검사항¹⁷⁾

- (가) 위기상황에 처했는지 여부
-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여부
- 생계유지 등의 곤란
-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상담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연계하여 기존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다) 소득 및 재산 확인

- 가구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을 개략적으로 파악 ※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님
- 기초생활보장, <u>기초연금</u>, 보육료, 희귀난치성질환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기 조회되었던 소득·재산 정보를 참고

¹⁷⁾ 긴급지원사업 안내 서식 10호 현장확인서 참조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징구(서식 4호)
 -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 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후에 제출받을 수 있음
 - 1. 의식불명인 경우
 -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 3.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현장확인¹⁸⁾ 방법 및 절차

(가) 방법

- ① 지원요청자 또는 신고 된 자 방문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
 - 현장방문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제8조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해 2인 1조 방문
 - 의료지원의 경우 지원을 요청한 사람 및 의료지원대상자로 신고를 받거나 발견된 사람이 의료기관에 기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의 소견 청취¹⁹⁾
- ② 통·반장. 이웃주민 등의 진술청취 등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하되 통·반장. 이웃주민 등의 진술청취

¹⁸⁾ 지원요청접수(보건복지상담센터 연계포함) 후 지체없이(실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함. 의료 지원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요청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검사 등 부득이한 사유시에만 5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 긴박한 상황일 경우 지체 없이 현장확인 실시

¹⁹⁾ 지원요청인의 거주지와 입원중인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달라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 반드시해당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현장확인서, 의사소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확보

- ③ 유선확인, 최초 신청 시 구비된 증빙자료 확인, 관련인 진술 등을 토대로 위기상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로 현장확인 생략 가능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의료 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나) 절차

- 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제시 [서식14]
- ②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로 현장확인서 작성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포괄적으로 판단한 현장확인서 만으로도 지원결정 가능. 추가 증빙을 위한 참고자료는 즉시 제출 가능한 것이 아니면 사후조사 시까지 보완 가능한 만큼 보완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이유로 신속한 선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③ 보건복지상담센터로부터 연계받은 건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 현황 정보를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통보

(3) 지원 결정 및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²⁰⁾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음²¹⁾

²⁰⁾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확인 후 만 1일(실근무시간 기준 8시간)이내 결정 및 지원 완료

²¹⁾ 상황이 매우 긴박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전결로 지원결정 및 지원 가능

다. 지원단위

(1) 기본원칙: 가구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

- ① 지원의 종류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
 - 가구단위 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연료비 지원, 전기 요금 지원
 - 개인단위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지원
- ② 가구단위로 주급여, 부가급여 지원 병행
 - 가구단위 또는 개인단위에 대하여 위기상황에 따라 주(主)급여를 지원하고, 주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부가(附加)급여 지원
 - 주급여: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 부가급여: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③ 주급여 복합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동시에 둘 이상의 주급여 지원 가능
- (예시) 4인가구의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으로 소득 상실하고 주거상황 또한 퇴거 위기인 경우, 주소득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 남은 가구원 3인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 및 주거지원 (동절기인 경우 연료비 추가) 가능
 -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개별가구의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이 지속되거나 입·퇴원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 4인가구 생계지원도 가능

(2) 가구의 범위

- 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²²⁾
- 워칙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²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등 가구분리를 통하여 수급자로 보호해주는 특례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단,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가구구성원에 포함

(예외

- 직장등의 사유로 주소득자(主所得者)가 다른 가구구성원과 분리하여 주거 및 주민 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여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고 타인의 가정 또는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
- 기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족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동일 가구원에 포함
- 가구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u>생계급여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u>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되, 해당 가구원을 제외하여 긴급 생계지원
 - ※ 예) 4인 가구 중 청년지원금 수급자가 1인이면 3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지급
 - ※ <u>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6월말까지 적용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2020년 7월 예정)되는</u> 시점부터는 미적용(가구의 소득으로 산정)
-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퇴거하거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부득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원가족(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족)만 가구원으로 산정 가능
-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 ①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 印「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체류자²³⁾

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²⁴⁾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²⁵⁾
-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형 집행정지자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²⁶⁾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27)
- 재외국민²⁸⁾
 - <u>단</u>,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

²³⁾ 인도적체류자: 난민은 아니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²⁴⁾ 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인 부모등과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²⁵⁾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구성원에 포함

²⁶⁾ 사후조사 내지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가출 등의 추이를 추가로 확인

²⁷⁾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현장확인서 첨부

²⁸⁾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3) 가구원의 변동

- ①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지급기준
 - 제외된 회차의 긴급지원금 전액 지급
- ② 가구원 출생 시 지급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다음 회차에 소급지급
- ③ 가구원 사망 시 지급기준
 - 사망한 날이 속하는 회차의 긴급지원금은 전액 지급 ※ 단, 단독가구의 경우 지급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 한 경우 미지급
- ④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
 -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회차까지 지원 후 중지

제 3 편

긴급지원의 실시

1. 생계지원	41
2. 의료지원	43
3. 주거지원	49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0
5. 교육지원	52
6. 그 밖의 지원	54
7.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60
8 근어지근 계좌	61

00000000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1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가.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1호 내지 <u>제9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 사람

나. 지원내용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금전 지원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²⁹⁾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

²⁹⁾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결정시부터 만 1일(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지원 완료

⁻ 지원대상자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

⁻ 다만, 긴박한 상황인 경우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을 생략하고 지체 없이 지원을 완료하여 대상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의 생계지원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다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u>휴업급여</u>, 보험금³⁰⁾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u>454,900</u>	<u>774,700</u>	1,002,400	1,230,000	<u>1,457,500</u>	1,685,0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원

마. 지원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 1개월 ①
 - 연장지원: 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³⁰⁾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비 수준의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생계지원 가능

2 의료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가. 지원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 ②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차액지원 가능
- ③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소아·성인)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보건소에 협조 공문 시행하여 보건소에서 익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소급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지원 가능
- ④ <u>기초의료급여수급자</u>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 ⑤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 ⑥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OO-F99)은 워칙적으로 지원 불가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 ※ 동일 상병의 기준 : 통계청 질병분류 사인코드 상 3자리 코드(예 : K85)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 인정
 - 단, 상이한 상병일 경우 다시 의료지원 가능하며,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나.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퇴원전 신청(단, 입원당시 유선 전화, Fax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 가능)
 -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소견서 등 확인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지원절차

- ① 의료지원 요청 →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³¹⁾ →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제외)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G코드(긴급복지지원 구분자)입력 할 수 있도록 안내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1호)참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관리-지급내역등록)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32)에 대하여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³¹⁾ 긴급의료지원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

^{- 5}년전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 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³²⁾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가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급여화 된 상급병실 이용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진단서 등을 통해 불가피한 이용을 인정 한 경우에 한해 최대 5일³³⁾의 범위 내에서 선별급여의 형태로 지원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됨(예: 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 등)
 - 지원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의사, 수술장비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 전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지원가능
-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의료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상한액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전액 긴급지원 가능
- 요양급여 지원 상한액
 - 건강보험: 1년간 101만원*(소득 2-3분위)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u>제4항(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에 따른 금액으로 소득</u> 분위 1분위 <u>81만원</u>, 2-3분위 <u>101만원</u>, 4-5분위 <u>152만원</u>은 정액, 기타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통계청 '19.12월 말 발표)을 반영한 금액임을 참고
 - 의료급여 1종 : 매 30일간 5만원
 - 의료급여 2종 : 연간 80만원(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
 - ※ 요양급여중 전액(100/100)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로 산정하여 지원

³³⁾ 다만, 감염 및 전염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금액을 알 수 없어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지원대상자가 의료 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납부하게 하고, 보험금 수령 이후 그 차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지원 가능
 - 다만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원하되, 추후 의료지원대상자가 보험금을 수령 받은 이후, 旣 지원 의료비중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 조치
 - 의료지원 요청자가 신청 후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 수령 또는 수령할 사망보험금액에서 의료지원 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마. 지원기간(횟수)

- 원칙:1회 지원
-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 ※ 다만, 긴급지원심의회 심의를 통한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00만원 이내)을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 지급할 수 없음에 유의
 -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바. 보장기관(시·군·구)의 비급여진료비 심사요청 및 환불금 처리

○ 적용대상 : 긴급의료지원 금액 중 비급여진료비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의료지원 대상자

- 심사요청 : 시·군·구청장이 비급여진료비 150만원 이상인 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비급여) 확인요청(제6편 '별첨1' 서식 참조)
 - 의료지원 결정시 의료지원 대상자로부터 진료비확인요청 대행에 따른 위임장 징구 (제6편 '별첨2' 서식 참조)
 - 확인요청 시기는 심사요청대상 발생시 마다 요청하되, 심사요청 건수에 따라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취합하여 요청 가능
 - * 인터넷(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서면(우편, 방문, fax)으로 요청
- 환불금 처리: 지원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금액 처리의 예에 준함
- 심사결과 보고 : 심사평가원은 반기별로 진료비확인요청(개인 및 시군구)에 따른 심사 결과 분석결과(부당청구, 환불액 등 현황)를 복지부에 보고
 - ⇒ 세부내용은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화불처리 절차' 참조

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관계

-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의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연계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의료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600만원 이하 대상자의 경우, 양 제도의 지원범위 및 소득·재산기준 등이 상이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자에게 유리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담당자(지자체/건보공단) 간 대상자 명단 및 지원 사항 등 유선 확인 철저 등 상호 적극 협조

긴급복지사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구분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 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별도로 정하는 중증질환
지원 횟수	• 동일상병에 1회 지원 * 위기사유 미해소시 1회 연장 가능 * 동일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연 20 백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 <u>1,317,896원</u> , 4인기준 <u>3,561,881원</u>)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의료급여, 차상위 당연적용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소득·재산 수준, 질환 특성 등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성 인정 시 추가 지원
재산 기준	 재산:대도시(188백만원), 중소도시(118백만원), 농어촌(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5백만원 이하 	• 재산: 과표 540백만원 이하가구
지원 금액	• 3백만원 이내	• 연간 3천만원(2천만원+개별심사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액 50% 지원
지원 범위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상급 병실료 제외	•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100대100 항목의 본인부담액 ※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는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지원 신청	• 시군구(긴급복지담당) • 퇴원 전	건강보험공단(재난적의료비 담당) 퇴원 후 180일 이내 입원 중인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관련 상세 내용은 '20년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참조

③ 주거지원(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가.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방법 및 절차

-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³⁴)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 다만,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u>1회에 한하여</u>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³⁵⁾
 - ※ <u>긴급주거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1촌의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인정하지</u> 않음

다. 지원기준36)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³⁴⁾ 개인가정 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시·군·구청장이 임시 거처로 인정(확인)되는 각종 주거형태를 의미

³⁵⁾ 금전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고 이 경우 지원기준 금액을 지급한 후 추후 주거상태 확인

³⁶⁾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농어촌:도의 "군"

라. 지원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 1개월 ①
 - 연장지원: 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기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가.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절차 :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가능

다. 지원기준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 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라. 지원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 1개월 ①
 - 연장지원: 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입소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단위로 지급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지원 가능

5 교육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2)

가.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해당 분기의 학비를 완납한 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고교학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교 교육비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등
 - ※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나. 방법 및 절차

- 원칙: 금전지급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예외

- 현물지원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
- 금전 및 현물지원
 - 학부모의 학생보호가 소홀한 경우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 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 에시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학비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 자녀와 별거 등
 -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 또는 상기 학부모 외의 보호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급
 - 학용품, 부교재비 등은 현물로 지급 가능

다. 지원기준

(단위: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라. 지원기간

○ 워칙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분기 구분

-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2분기: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 긴급지원 기간 내에 발생한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지원 가능

○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 추가지원 횟수:
 - ① 생계지원, 의료지원, 시설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1회
 - ②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최대 3회
- 주거지원의 경우 교육지원 횟수는 주거지원 기간과 교육 분기를 일치시킬 것

6 그 밖의 지원(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가. 지원개요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6-1 연료비

가. 지원의 내용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37)

나.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 주거)를 받는 가구
 -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기준

○ 월 98,000원 지급

³⁷⁾ 긴급복지 주급여(생계, 주거) 기간이 9월17일~10월16일인 경우 지원기간이 동절기에 속하므로 연료비 추가지급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입금(월별 정액급)하는 것이 원칙
- 주급여 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
- 주급여가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 종료
- 현물제공시 ①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 워칙:1개월 ①
 - 추가지원: 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매월단위로 지급(3개월분 일시 지급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 주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추가 연장지원 심의 시 연료비 추가 연장지원도 안건에 포함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에너지 바우처 및 긴급복지 중복 처리방법

- (신청단계)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주거)를 받는 기초의료수급자가 긴급연료비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수급여부 사전확인 및 중복 수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안내
 - ※ 2이상 가구인 경우 긴급연료비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이 많으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단 시·군·구청장이 3개월 우선지원을 결정한 경우 긴급연료비 신청토록 안내
- (지급단계) 행복 e음 통합상담내 one-screen 확인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1회차 미지급, 2회차부터 긴급연료비 지급

6-2 해산비

가. 지원의 내용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나.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다. 지원기준

○ 1인당 <u>700천원</u>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u>1,400천원</u> 지급)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산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마. 중복지원 제한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중복지원 불가

6-3 장제비

가. 지원의 내용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³⁸⁾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나.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지원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 가능 ** 예시) 신청일:1.1. / 사망일:1.2. / 선지원 결정일:1.3.

다. 지원기준

○ 1인당 <u>800천원</u> 지급³⁹⁾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단독가구주의 사망⁴⁰⁾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³⁸⁾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가구원이 ① 미성년인 자녀, ② 65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④ 환자 등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장제를 행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기사망한 주소득자(主所得者)에 대한 장제비 지원도 가능

³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⁴⁰⁾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비로 지급

② 다만, 사망자가 유류한 유가증권 등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③ 유류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에 준용하여 처리

○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6-4 전기요금

가. 지원의 내용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주거) 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나. 지원대상

- 단전이 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대상 가구에 지원
 - ※ 전기요금지원제외 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다. 지원기준

-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한국전력공사 아름다운재단 등 다른 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에 대하여 지원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전기요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고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지급
-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전기요금지원신청서(전기요금 고지서 첨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 6-1~4 공통사항

□ 현금지급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⁴¹⁾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직권신청 처리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신청자(또는 잔여가족)가 ① 의식불명인인 경우,②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③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신청 처리 및 지급 가능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1회 지원

⁴¹⁾ 급여 계좌지급 예외 기준 참조(p.58)

7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가. 관련 민간기관·단체

(1) 지방차원

- 로타리 클럽, 각종 직능단체, 복지후원회 조직, 개인 후원자, 병·의원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의 복지자원 확보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 재단, 각종 복지재단 등 연계할 기관, 단체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2) 중앙차원

- 연계할 기관, 단체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나. 지원유형

- (1) 상담·정보제공 등은 필요시 수시로 지원
- (2) 정부의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

다. 연계방법 및 절차

- (1) 상담·정보제공 등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 중 정보제공

(2) 정부지원 후 연계하는 경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민간기관·단체에 의뢰 → ② 민간기관·단체의 심의·결정
→ ③ 민간기관·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정 통지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결정내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통지·연계

8 급여지급 계좌(긴급복지지원법 제9조2, 제18조)

가. 급여 계좌 원칙

- 긴급지원금은 반드시 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기존에 복지제도 급여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계좌로 지급
 - 다만,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은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 등)에 지급가능

나. 급여 계좌 예외

-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지급함
 - ① 다음 해당 사유의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가능
 -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 법정후견인이 지정되기 전까지 형제자매, 친척, 이·통장, 복지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긴급지원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급여관리자로 지정 및 현금지급 가능 → 이 경우 해당 급여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필요
 - ②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선고를 받은 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선고를 받은 자의 민법상 후견인* 명의 계좌로 입금
 -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 혈족, 법원에 의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
 - ③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의료 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다. 대상자 명의 확인방법

- 급여이체 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
- 시·군·구와 주거래은행간의 관련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상자 금융정보(성명, 계좌 번호)와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를 비교 검증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금융결제원을 통한 적정성 확인
- 지급결정이 끝난 급여지급 자료에 대해 시·군·구 회계과에서 'e- 지로시스템'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시·군·구로부터 입금의뢰 받은 대상자의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은행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결과 일치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반납결의 한 후, 해당 건에 대해 계좌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재확인하여 지급
- 위기가구 지원이 긴급한 경우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해 시·군·구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을 생략하고 즉시 계좌입금 등으로 지급 가능
 - 다만, 수급계좌 적정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통장사본 징구

라. 급여계좌 수: 1인 1계좌

○ 지원결정 가구를 구성 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마. 기급지원수급계좌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긴급지원수급계좌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지원대상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지원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를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 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서식 12호)^{*}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 *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또는 공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서식 11호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예금통장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 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 긴급지원 수급계좌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에 주의요망

제4편

사후조사

1. 개요	67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68
3. 소득조사	71
4. 재산조사	80

00000000

제4편 사후조사

1 개요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가. 사후조사의 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파다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 보호 또는 지원으로 연계 보호하기 위함

나. 사후조사의 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소득・재산 참고 기준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5,542,2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증가(8인 가구 6,204,796원)

② 재산기준

지 역42)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백만원)	188	118	101

③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⁴²⁾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다. 사후조사 시기

- 긴급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조사
 - 다만,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가. 전산자료 조회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수시 제공

⇒ 주의사항

- 자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워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 공적자료 변동으로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확인 후 보장중지 또는 급여변동 등 처리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 적용
 - * 반드시 증빙자료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나. 금융재산 조회

○ 일괄조회 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적정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후조사 보고서에 그 사실을 적시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함

- 반드시 제4호 서식에 따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⁴³⁾를 징구한 자에 한하여 조회 실시
 -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경우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 자료의 제출요구는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즉시 제출가능 한 수준으로 하고,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현장확인서 등을 우선 활용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중 일부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사후조사 보고서에 첨부, 보관함
 - 가구원 확인: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행방불명 신고접수증 등
 - 소득, 취업·퇴직 확인: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⁴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휴·폐업확인서 등
 - 재산확인: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보험가입 증명서 등
 - 기타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월세지출(임대차 확인서), 소득신고서⁴⁵⁾,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출근부, 출소증명서 등

⁴³⁾ ① 긴급지원 요청에 따른 현장확인 시 기재한 내용과 다른 금융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요청서의 유의사항 하단에 지원요청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받도록 함

②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시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한 후 각각 한글전자서명 또는 무인, 날인을 하도록 하여 징구

⁴⁴⁾ 제5호 서식

⁴⁵⁾ 제6호 서식

라. 조사수행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시·군·구 소속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 실태조사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현장조사서를 휴대 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마.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리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시 긴급지원대상자가 진술했던 소득, 재산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사후조사 보고서에 적시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 지원 적정성 심사 시 제출하여 부적정 결정하고, 지원중단 또는 기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

바.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제7항 및 제19조)
 - 사후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소득조사

가. 개 관

(1) 소득의 의미

- 긴급지원대상자의 사후조사 시 "소득"은 소득에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⁴⁶)을 의미함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그 밖의 소득*

차감 지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2) 소득산정 기준 시점

- 긴급지원 요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

(3)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가) 근로소득

①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 ①「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②「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 (「소득세법」제12조제3호 서목)

② 유 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⁴⁶⁾ 가구특성별 지출을 차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

- 일용근로자 소득: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③ 조사방법

- ⑦ 상시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개인민원」 「조회발급」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에서 신고 된 평균보수 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이 필요시 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 자료 제공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 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J) 일용 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확인서⁴⁷⁾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 ※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① 자활근로소득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⁴⁸⁾의 임금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어 반영
 -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나) 사업소득

① 농업소득

⑦ 정의

○ 경종업(耕種業)⁴⁹⁾,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⁵⁰⁾,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⁵¹⁾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47) 2018}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사업별 서식6호「일용근로 사실확인서」활용

⁴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제1호(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⁴⁹⁾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⁵⁰⁾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판매하는 업

⁵¹⁾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판매하는 업

(i)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가 조회되는 경우,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 농산물 소득정보 : 농촌진흥청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에서 「농업경영」 (농산물 소득정보)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작물별 단가

- * 경작면적: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 재배작물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신고
-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필요경비):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② 임업소득

⑦ 정의

○ 영림업(營林業)·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J)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 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③ 어업소득

⑦ 정의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J)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④ 기타 사업소득

- ⑦ 정의: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i)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 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하도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다) 재산소득

① 임대소득

- ② 정의: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파악

② 이자소득

- ⑦ 정의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③ 연금소득

- ⑦ 정의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i)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④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⑦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받은 연금 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라) 기타소득52)

- ① 공적이전소득 정의: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 금품
 - 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②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⁵²⁾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양비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추정소득은 부과하지 않음

③ 무료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동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아동 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연금 및 수당: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한민국체육 유공자 연금 및 수당 등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각종급여: 간호수당, 부양가족 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 「석면피해 구제법」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 또는 임차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직접지불 보조금
-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 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③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4)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 ①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금융재산(기타일시금)으로 산정하여 처리
- ②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 <u>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6월말까지 적용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2020년 7월 예정)되는</u> 시점부터는 미적용(가구의 소득으로 산정)
 -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워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③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53)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 *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취업성공수당: 1인당 최대 150만원
 -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41.6만원/월

(5) 소득에서 차감되는 지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 요청 당시의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차감
 - 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로서 평균 1개월의 의료비, 약제비, 간병비
 - ②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대학생·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기성회비 ※ 당해연도 납부한 입학금·수업료의 월평균 지출액
 - ③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로 주거를 임차한 경우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 ※ 이 경우 차감되는 주거비는 주거지원 기준을 넘을 수 없음
 - ④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 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인하여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비용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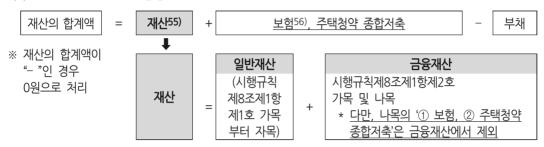
⁵³⁾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

⁵⁴⁾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제외

4 재산조사

가. 개 관

(1) 재산의 의미 및 산정방식



(2) 재산가액 산정기준

- 사후 조사일을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공적자료에 의한 가액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토지는 지역별 적용율 사용)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보험개발원 산정 가액 우선적용 후 지방세 차량가액 자료 활용

⁵⁵⁾ 재산가액 산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⁵⁶⁾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볔	과세기주	산정방식
\/		게단어표근		-cc

재산종류		재산 종 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E 7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도 시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건 -	- 주택	rle zeii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축 물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2		건 물	_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_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	
	입목재산/어업권		_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	

(3) 재산의 종류 및 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 (가) 일반재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구성원 명의57)의 다음 재산을 말함
 - ①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58). 건축물59) 및 주택(제104조제1호에서 3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관련서류 확인 및 입증자료 시스템에 등록)
 -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⁵⁷⁾ 해외체류, 가출, 행방불명, 실종, 군복무,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와는 달리 이를 재산 가액에 산정하지 않음 → 이 경우 신청이후 재산상황에 대한 소명을 받되 생계가 곤란한지에 대한 확인 필요

⁵⁸⁾ 논·밭·임야 등

⁵⁹⁾ 건물, 시설물 등

- ②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③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④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⑤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및 「지방세법」에 따른 입목(제6조제11호)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⑥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제14호부터 17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7)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 ⑧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⑨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지방세법제6조제13호)

(나)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4) 부채

- (가) 정의: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으로 차용된 금액 중 미상환액
 - *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등록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포함

(나) 원칙

-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된 부채는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결과대로 적용
 - 공적자료 외 부채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거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전액 공제
- <u>개인 간 부채(사채)는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또는 법원의 화해·</u> 조정조서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 인정
 - <u>다만, 공정증서와 매월 이자지급통장 사본(동시충족)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u>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 가족(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간 부채는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다) 부채의 종류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60)

(라) 부채 인정 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외)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임대보증금 산정방식61)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주택구입 자금 부채상환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남은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하고. 지출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부채로 처리

예시 1 8천만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천만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중 2,800만원을 주택구입 자금 부채로 상환하고, 금융기관에 200만원을 예치한 경우

- 재산의합계액: 5천4백만워
 - 일반재산: 11천만원(주택 8천만원, 임대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 : 2백만원
 - * 금융재산 조회 결과 통보된 금액(임대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금융재산 적용)
 - 부채: 5천8백만원(주거부채 2,800만원, 세입자 임대보증금 상환액 3천만원)

- ① 공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 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 ②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한국자산편리공사(캠코)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개인회생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원금의 30%가 탕감되고,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
- ④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대출금
- ⑤ 개인 간 부채(시채):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시채, 법원의 회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시채
- 6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금융재산 공제로 처리하지 않음

⁶⁰⁾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채 처리

예시 2 8천만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천만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

- 재산의 합계액: 11천만워

• 일반재산: 11천만원(주택 8천만원, 임대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 : 3천만원

* 금융재산 조회 결과 통보된 금액(임대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적용)

• 부채 : 3천만원(세입자 임대보증금 상환액 3천만원)

○ 임대보증금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 보증금 상환액으로 처리

예시 3 8천만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천만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재산의 합계액: 8천만원

• 일반재산: 11천만원(주택 8천만원, 임대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 : 없음(금융기관 통보금액 없음)

※ 다만, 현금, 사인간에 빌려준 금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재산 적용

• 부채 : 3천만원(세입자 임대보증금 상화액 3천만원)

○ 임대보증금 전액을 잔금으로 상화한 경우 부채 처리

에서 4 8천만원 주택 구입시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받아 잔금으로 모두 상환하고, 금융기관에 예금 하지 않은 경우

- 재산의 합계액: 5천만워

• 일반재산: 11천만원(주택 8천만원, 임대보증금 3천만원)

• 부채 : 6천만원(주거부채 3천만원, 세입자 임대보증금 상환액 3천만원)

(라)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담보 설정액(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인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합인에 의한 대출

나. 재산유형별 조사방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

- (가) 정의: 지방세법(제104조1호 내지 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 건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 등
 - 시설 및 부수시설(지방세법 제6조제4호):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 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는 시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 ▶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워지의 옥외오락시설
- ▶ 옥외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 ▶ 도크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 ▶ 급·배수시설: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 에너지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 ▶ 기타시설: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 부수시설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 토지
-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 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참고〉 토지가격 적용률

*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1,000만원/0.9 = 1,111만원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지 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 울특 별시	0.9 (전지역)
부산광역시	0.9 (전지역)
대전광역시	0.9 (전지역)
인천광역시	0.9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 (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 (區지역) / 0.8 (달성군)
광주광역시	0.9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 (남구)
울산광역시	0.9 (區지역) / 0.8 (울주군)
세 종특 별자치시	0.8 (전지역)
경 기 도	0.9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군,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 (용인시의 처인구) / 0.6 (용인시의 기흥·수지구)
강 원 도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충청북도	0.9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 (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전라북도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전라남도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경상북도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경상남도	0.9 (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 (창원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0.9 (市 지역)

[※]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긴급지원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2) 선박·항공기

- (가) 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선박: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⁶²⁾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보정계수: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3) 자동차

(가)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류자동차

(나)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 시스템(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⁶³⁾정보를 반영

(다)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라) 전기차의 재산산정

○ 차량구입 시 지원받은 보조금까지 재산으로 산정

⁶²⁾ 보정계수: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⁶³⁾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4) 임차보증금

(가)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적용률(0.95)

* 보정계수 설정취지: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함

(5) 동산 및 입목재산

(가) 동산

1) 정의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2) 조사방법

- 가축·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 등 생활 필수품은 제외

(나) 입목재산

1)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제11호)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5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18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2)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6) 회원권

(가)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내지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 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8) 분양권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9) 어업권

(가)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 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10) 금융재산

(가)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다만, 「주택법」제56조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보험⁶⁴)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나)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다) 금융정보 등 조회

준용함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①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③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市勢價額)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 * 비상장 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
- ④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⑤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⑥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⑦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조회기준 금액:계좌당 10만원 이상
-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64) - &}quot;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은 일반재산이 아니라 금융재산(기타 일시금)으로 봄에 유의

^{-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①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등(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②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再保險) 등(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③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유의사항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워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 대로 적용
 -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금융재산 중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의 조회 범위는 신청월 기준 6개월~3개월이전⁶⁵⁾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회결과 적정성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긴급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금융재산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비용 징수 등 법령에 의거 조치함
- ⇒ 지원연장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을 중단함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마)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

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당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공제

⁶⁵⁾ 예시: 12월에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조회기준일이 9.30일이 되면 9·8·7월의 평균잔액이 조회됨

제4편

사 후 조 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금융재산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u>1,757,194</u>	2,991,980	<u>3,870,577</u>	<u>4,749,174</u>	<u>5,627,771</u>	6,506,368	7,389,715
공제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수준)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4,229,000	4,803,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75,000원 증가(8인 가구 5,378,000원)

②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지출 범위

- 지출항목: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 매월 일정하게 지출한 항목66)등
- 적용방법: 신청일 기준 <u>최근 3개월</u>⁶⁷⁾ 동안 발생한 것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차감

③ 농·축·수협·신협 출자금 또는 희망키움통장

- 조회결과 농·축·수협 출자금 및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등의 자금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차감 가능
- 출자금: 단위농협(또는 수협)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시 출자한도액 범위내 출자액
- 희망키움통장 등68): 가입기간 중의 본인 저축액

(바)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워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산재보험급여, 보휴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화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보휴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⁶⁶⁾ 예시: 전·월세 등 주거임차료,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아파트 관리비, 동절기 연료비,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채상환액(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금융기관(외)에서 대출받아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사채는 불인정) 등

⁶⁷⁾ 매주 화요일까지 신청된 금융재산 조회는 금요일에 일괄 전송됨에 따라 해당주의 금요일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전 말일까지의 금용재산 조회가 이루어짐. 따라서 금융재산 조회 기간 이후의 최근 3개월에 대한 공제 가능예시: '18.12.24(화) 금융재산 조회 신청, '18.12.26(금) 일괄 전송, '18.9.30까지의 평균잔액 회신 '18.12.31(월) 금융재산 조회 신청, '19.1.4(금) 일괄 전송, '18.10.31까지의 평균잔액 회신

⁶⁸⁾ 디딤씨앗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플러스통장 등 정부,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 사용처를 입증하기 곤란한 내역에 관하여는 일시금 발생월부터 신청월까지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5% 수준으로 자연감소분으로 공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일시금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u>1,757,194</u>	2,991,980	3,870,577	4,749,174	<u>5,627,771</u>	6,506,368	7,389,715
공제금액 (기준중위소득 55% 수준)	966,000	1,646,000	2,129,000	2,612,000	3,095,000	3,579,000	4,064,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86,000원씩 증가(8인 가구 4,550,000원)

용 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 주거임차료(전·월세등),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등), 아파트 관리비, 동절기 연료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채상환액(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금융기관(외)에서 대출받아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사채는 불인정)) 등

일시금 처리 예시

- A씨(4인 가구)가 '19.1.4.에 긴급지원을 신청하여 사후조사 결과 '18.8.17.에 일시금 3,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
 - 사용처를 제시한 의료비 1,400만원 확인(차감)
 - 1,600만원 = 3,000만원 1,400만원 예시) 1,400만원을 자동차 구입에 사용한 경우 일반재산 (자동차)으로 변경
 -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1,600만원에 대한 일시금 처리?
 - 1,522.2만원 = 6개월((발생월)'18.8월~(신청월)'19.1월) X 253.7만원(4인가구 공제금액))
 - 일시금 적용금액: 77.8만원(1,600만원-1,522.2만원)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구	구분 조사형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상시근로소득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확인조사시만 제공	매월(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근로 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신청 조사시	연 2회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 최근 6개월 자료)	매분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매월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등록한 임금지급내역	매월
소 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소득 (고용노동부)	수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근로 내역정보(노인, 장애인 일자리 포함)	연 2회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 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사업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연 2회
			*소유사업장 직원수	수시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연 1회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재산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2회
		이자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 득 -보장별 공제금*)/12	연 2회
		연금(개인)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저축, 보험 등) 개시 후 연금의 월 수령액	연 2회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기타	공적이전소득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소득	0 7 9 6 4 7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고정 : 1월 • 변동 : 4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 2회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월 •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건축물 (주택, 건물,	*국토교통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월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월 •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일반	시설물)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주
재산	재산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월 •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월 •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구	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임차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부)	수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매월
		분양권	*분양권(국토부)	수시	분양권 보유정보	매월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국토부)	수시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매월
		건설기계	*건설기계(국토부)	수시	건설기계 보유정보	연 2회
		요구불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	연 2회
		저축성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계좌잔액	연 2회
	금융 재산	증권거래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 신탁 등 : 최종시세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 (양도성 예금증서), 신주 인수권 증서 등 : 액면가액 (3) 예수금 : 잔액	연 2회
		보험증권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보험 해약시 환급금 (계약자 기준) (2) 개시 전 연금보험, 연금 저축 해약 시 환급금	연 2회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년 이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지급액(수익자 기준)	연 2회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연 2회
		자동차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분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대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대출 잔액	연 2회
부채	출	신용카드 연체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신용카드 미결제액	연 2회
		임대보증금	*국토부 임대보증금	수시	주택소유자 임대보증금액	매월

- ※ '*' 표시된 항목은 자동반영(일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며 그 외는 참고자료로 제공
- ※ 국토부 선박원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 ** 농업직불금은 전년도 자료를 소득으로 우선 반영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함

구분	1사분기 자료	2사분기 자료	3사분기 자료	4사분기 자료
사업주 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2월말
복지부 입수	7월말	10월말	다음해 1월말	다음해 5월말

제 **5** 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101
2. 지원연장 결정	106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108
4. 결손처분	112
5. 이의신청	113
6. 사후 연계	115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119

00000000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

- ㅇ 발굴된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긴급지워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 실직, 휴·폐업 관련 제한규정* 및 재산·소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지원 결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의
 - * (현행) 공급가액 48백만원 이상 일반과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실직 후 1개월 경과 등
- o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상기 해당자에 대한 적정성 심사시 지자체 담당자가 위기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적극적 대상자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 할 것
 -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운영중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유사한 취지이며 지자체 담당자는 이러한 취지에 대해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
- o 심의회를 월 1회 이상 의무 개최
- 사후조사 결과 금융재산 등 기준초과 가구의 경우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심의하고 위원회는 기준초과라 하더라도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된 경우, 위기정도에 따라 신속한 추가지원결정 할 것
- 위원회는 종합적인 고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심의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 결정할 것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As-Is	To-Be
심의 안건	선지원 결정에 대한 걱정성,	지원연장결정, 중지·환수결정
기능	선지원 결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 위주	적극행정을 통한 위기가구의 보호
운영횟수	월 1회 권고 (2개월에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의무 개최
실직 휴폐업 관련 제한 규정에 따른 기준 초과 가구에 대한 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배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선지원 결정 후 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
재산 기준 초과 가구에 대한 심의	위기상황에 대한 적정성 심의후 지원 중단	위기상황에 대한 적정성 심의 후 추가 지원 가능

가, 적정성 심사 목적

- 긴급지원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통제 장치를 두어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행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 판단

나. 적정성 심사 기관

- 기급지원심의위원회
 -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 활용 가능 (소위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처리, 본 위원회에서 반대 의결한 경우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다. 적정성 심사 대상 등

- 심사시기:시장·군수·구청장의 사후조사 완료 후 실시⁶⁹⁾
- 심사대상
 - 최초 실시한 선지원 1개월(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 1회) 지원 건70)
 - 그 외 금전 및 현물지원을 한 모든 건에 대해서도 적정성 심사71)
 - 위원회 심사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장 확인시의 긴급지원 대상자의 진술과 사후에 금융조사 등이 결과와 다른 사실이 밝혀져 시장·군수· 구청장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의 지원 건

⁶⁹⁾ 금융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적정성 심사는 가능

⁻ 다만, 금융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장확인 시 본인의 진술과는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이 비용화수 결정

⁷⁰⁾ 적정성 심사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연장 결정을 한 건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연장결정한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아니함

⁷¹⁾ 적정성 심사 완료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원연장 결정까지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됨

○ 심사 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⁷²)할 수 있음
- 위기상황의 발생이 명확하고 사후조사 결과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명백하게 충족한 경우 적정성 심사 생략 가능
 - ※ 예) 주소득자의 사망사실이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하고 사후조사 회신 결과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공제 후 금액 적용)
- 부가급여에 대한 지원 적정성 심사는 주급여 지원 적정성 심사로 갈음

심사 생략 취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 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다소 증가할 수 밖에 없는바, 기존 처리 업무 중에서 불필요 또는 중복되는 부분을 없앰으로써 업무량 증가를 최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상기와 같이 지원사유가 명백한 경우 적정성 심사를 생략하도록 함.

- 심사 절차 간소화(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활용)
 - 지원 연장 결정 등에 있어 긴급함을 요구하는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위 소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종료가 가능함
 - 이 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 처리가 가능하나 본 위원회에서 반대 의결한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활용 적정성 심사 예시〉

신청자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활용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건경시	시장정말보장 보게전의 필증	심의	의결	
A 건		,,,,,,		
B 건	지원 연장 결정 등에 있어 긴급함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의·의결	생략 (사후보고)	의결	
C 건	100240 411241111 10914 1411	(*11)		
E 건	심의·의결 하지 않음	심의	이견	
F 건	'심의' 위설 이시 않음	심의	의결 	

⁷²⁾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특히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기준은 기초수급자와 긴급지원대상자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 필요

라.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의 적정성
 -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산술적 심의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초과된다 하더라도 현장확인 시의 지원 필요성과 긴급성,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곤란 개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
 - ※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① (중략)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초기 판단(선지원)에 대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하도록 함

고의 또는 중과실, 거짓 및 부당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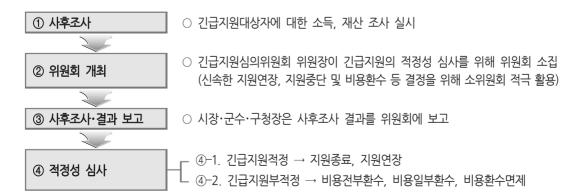
⇒ 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 ① 지원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② 신청자가 고의로 소득·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한 경우
- ③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 또는 타인에게 지워한 경우 등

⇒ 신청인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

- ①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을 받은 경우
- ②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경우
- ③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 ④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마. 적정성 심사 절차



바. 심사완료 시기

○ 원칙: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

사. 적극행정 면책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1항
 -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지원연장 결정(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가. 목적

○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나. 지원연장 사유

-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 의료지원
 - 의료지원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추가 지원 시, 심의 상정을 위해 해당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재산소득조사 활용 가능

다. 지원연장 결정 기한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라. 지원연장 결정주체 및 연장기간/횟수

-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으로 2개월 연장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로 3개월 이내(주거지원은 9개월 이내) 연장 지원할 수 있음

○ 의료지원, 교육지원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지원은 3회 범위에서 연장 가능

지원종류		기 본(A) (시·군·구청장)	1차 지원연장(B) (시·군·구청장)	2차 추가연장(C)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최대 지원기간 (D=A+B+C)
	(가) 생계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	3개월 범위	6개월
주	(나) 의료	1회(선지원)		1회	2회
급	(다) 주거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	9개월 범위	12개월
여	(라) 사회복지 시설이용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	3개월 범위	6개월
부	(마) 교육	1회(선지원)		1회 (주거지원 3회 범위)	2회 (주거지원 4회)
ㅜ 가 급 여	(바) 연료비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	3개월 범위	6개월
	(바) 해산비	1회			1회
	(바) 장제비	1회			1회
	(바) 전기요금	1회			1회

^{* (}법 제9조제1항제1호) 가목=(가), 나목=(나), 다목=(다), 라목=(라), 마목=(마), 바목=(바)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연장지원 간소화

- 대상:시·군·구청장의 연장지원 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심의위원회를 통한 추가 연장 지원대상자
- 내용: 위기상황 해소 가능여부를 판단 4개월에서 최장 6개월(주거지원은 최장 12개월)까지 한 번의 심의를 통한 연장결정
- 연장지원 절차
 - □ 시·군·구청장 연장결정:3개월까지
 - 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연장결정
 - 1개월 단위 연장 : 소득, 재산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개월(주거지원은 9개월) 전체 연장 : 소득, 재산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 © 사후관리: 매월 종료 3일전까지 위기상황의 해소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연장지원 중단 및 지속여부 판단
 - 기존 사후조사 결과와 상이한 공적자료(타 사업 신청 등)가 확인되는 경우 사후조사를 재실시하여 확인

바. 지원연장 결정 안내

○ 시·군·구청장은 자체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함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가. 지원중단 및 비용 환수대상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가) 의미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 소득·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 (나) 판정 및 환수결정기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다) 화수금액73)

- 원칙: 반드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화수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비용을 반화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일부만 반화하게 할 수 있는 사유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⁷⁴)

⁷³⁾ 긴급지원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원비용 환수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할 수 있음

⁷⁴⁾ ① 지급된 지원비용 등을 이미 소비하여 환수할 가용자산이 없는 경우

②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아니하였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가) 의미

- 사후조사 결과 현장확인 시 소명한 바와는 다르지만 고의적인 거짓은 없는 경우75)를 의미
- (나) 환수결정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다) 환수금액
 -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3)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가) 의미
- 집행상의 오류 등으로 과오 지원받은 경우
- (나) 환수결정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다) 환수금액
 - 초과 지원 상당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나. 징수대상자 관리

○ 긴급지원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⁷⁵⁾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유산의 존재 등

다. 지원비용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

(1) 지원비용 환수 납부통지

- 지원비용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납부를 통지하여야 함
 -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원비용 환수 납부통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 환수 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시에는 지원비용 환수 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하도록 함

(2) 분할납부

- 긴급지원기관은 지원비용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
 - 지원비용 환수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3) 독촉

○ 지원비용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라. 징수금액의 처리

- 긴급지원기관이 징수한 긴급 지원비용은 이를 징수 당해년도 지원분과 과년도 지원 분으로 구분하되,
 - 징수 당해연도 지원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 하고. 과년도 지원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긴급지원 비용환수 절차〉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 실시



적 정 성 심 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기관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여부 심사



지원비용 환수결정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관에서 결정 *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납 부 통 지

○ 납부기한: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기한을 6일 이상 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체 납 처 분

○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4 결손처분

관 련 조 문

⇒ 지방세징수법

-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94조(결손처분)**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제도의 개요(법 제16조)

(1) 이의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결정내용(연장결정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

(2) 이의신청인

- 긴급지원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
- 긴급지원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화 명령을 받은 자

(3) 이의신청 기한

○ 결정통보 및 비용반환 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이의신청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분 효력의 소급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 하지 않는 한 지원요청결과 통보일, 연장결정 통보일 및 비용반환 결정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시·군·구청장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 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나.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 담당부서)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양식은 제8호 서식으로 작성

(2)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 긴급지원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동의서를 받은 경우(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3)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서 작성
- 소속 관계공무원은 현장조사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준비 하도록 안내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 통지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서면으로 통지



6 사후 연계(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가. 의의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에 대해 단기간의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는 만성적인 빈곤상황에 접어 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만성적인 빈곤상황에 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기존 사회복지제도로의 연계 보호 가능성을 검토
 - ⇒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연계(국민기초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 가능)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에 긴급지원 중복 수혜 여부

-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4.12.30.)·시행('15.7.1.) 됨에 따라 양 제도 간 중복 여부는 기초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별도 판단
- 긴급복지지원 연장결정을 받은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 기초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복지원 불가
- 다만,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위기 상황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긴급지원 수급 여부					
일반 긴급지원 신청 가능	9	Ф	①	Ф	기준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신청 가능	@	e	•	기초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기준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신청 가능	Ф	©	기초 주거급여	기초 교육급여	◆ 중위소득 45% 기준
긴급 '생계지원' 신청 가능 * 다만 긴급한 사유시 '긴급 의료지원' 별도	a	기초 의료급여	기초 주거급여	기초 교육급여	◆ 중위소득 40% 기준
긴급지원 신청 대상 아님 * 다만 긴급한 사유시 '긴급 의료지원' 별도	기초 생계급여	기초 의료급여	기초 주거급여	기초 교육급여	◆ 중위소득 30%
* 기준 중위소득이 '@부터 ①까지' 범위이고 위기사유 발생시 긴급지원 신청가능					

-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 신청한 대상자 지원 방안
-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에 신청 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 보장도 신청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복지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되어 사후적으로 긴급복지지원과 기초급여가 중복 되는 경우, 긴급지원금 일할분과 기초급여 월급여를 비교 (긴급 생계지원-기초 생계급여 비교, 긴급 주거지원-기초 주거급여 비교)
- 해당 월의 긴급지원금이 기초급여보다 많으면 긴급지원금만 지급, 긴급지원금이 기초급여보다 작으면 차액분의 기초급여를 추가 지급

○ 운영 예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업무 처리방법

○ 신청 및 보장결정일

- 긴급복지 생계지원: 7.10일 신청, 7.16일 보장결정(1개월 지원 및 1개월 연장 결정),

8 17일 기초 보장결정에 따른 지원중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17일 신청, 8.17일 보장결정

○ 급여액 비교 및 기초급여 추가 지급 방법(2019년 기준)

예시 1 기급 생계지원액이 더 많은 경우

- 긴급복지 생계지원: 1,195,900원(4인 긴급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1,195,900원(4인 긴급생계지원)
 - * 7~8월은 31일로 1일 급여액은 38,577원
- 기초 생계급여: 300,000원(4인 생계급여)
- 급여지급 방법

해당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7월	7.16일 1,195,900원 (7.16~8.15일분) 7월분: 617,230원	전액 지급	8.20일 300,000원 (7월분)	긴급 급여가 더 많아 소급없음	
8월	8.16일 1,195,900원 (8.16~9.15일분) 8월분: 1,195,900원 〈8.17일 지원중지〉	전액 지급	8.20일 300,000원 (8월분)	긴급 급여가 더 많아 미지급	
9월	9월분: 578,670원	전액 지급	9.20일 300,000원 (9월분)	긴급 급여가 더 많아 미지급	
10월	-	-	10.20일 300,000원 (10월분)	전액 지급	

- * 9월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8월 지급분이 8.16~9.15일 분으로 일할 계산 시 8월분은 617,230원(1,195,900원/31일*16일)에 해당 하므로 8월 지급액 1,195,900원에서 8월분 617,230원을 차감한 578,670원이 9월분에 해당
- 9월분 긴급복지 생계지원 578,670원은 9월분 기초생계급여 300.000원보다 많으므로 9월 기초 생계급여 미지급

예시 2 기급 생계지원액이 더 적은 경우

- 기초 생계급여: 1,100,000원(4인 생계급여)
- 급여지급 방법

해당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7월	7.16일 1,195,900원 (7.16~8.15일분) 7월분: 617,230원	전액 지급	8.20일 1,100,000원 (7월분)	차액분 482,770원 소급지급
8월	8.16일 1,195,900원 (8.16~9.15일분) 8월분: 1,195,900원 〈8.17일 지원중지〉	전액 지급	8.20일 1,100,000원 (8월분)	긴급 급여가 더 많아 미지급
9월	9월분: 578,670원	전액 지급	9.20일 1,100,000원 (9월분)	521,330원 추가지급
10월	-	-	10.20일 1,100,000원 (10월분)	전액 지급

- * 기초생계급여가 긴급복지 생계지원보다 많은 경우 8월에 7~8월분 기초생계급여를 소급 지급 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해당 월의 일할 지급분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원
- 이에 8월 기초생계급여는 미지급하고 7월, 9월분 기초생계 급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차액 분을 지급
- 기급복지지원제도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때에 지원 중단 한 것을 전제로 예시 1.2 모두에서 급여 환수 등의 추가 처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기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안내 및 연계 노력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한부모 가족 중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따라〈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안내 노력
 - ※ 공통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구(조손가구 포함)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안내
 - 지원대상

〈공통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 <u>가구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u>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개별요건〉

- <u>「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u>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것
- <u>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사고, 질병, 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정신적·신체적 치료가 필요한</u>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20만원(원칙)
- 지원 기간 : 9개월
 - ※ 위기상황 지속될 경우 지원 종료 후 3개월 연장 가능
- 문의사항 : 양육비이행관리원 ☎ 02-3479-5514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으로의 연계

(1)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 재단 등 민간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지원협의회를 통해 긴급지원 후 연계방안에 대한 기본체계 마련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정부 차원의 긴급지원은 종료되었지만 위기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 민간기관의 지원사업(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사업, 아름다운재단의 긴급/특별나눔사업 등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여 민간과의 연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가. 전출

(1)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 모두가 전출하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에 관한 조사정보⁷⁶⁾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출 시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 별도 공문 송부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을 통해 전·출입 변동사항 확인 처리
- 추가로 관련 서류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스캐본) 이송
- 전출지에서 할일
- 조사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완료⁷⁷⁾ 처리 후 '변동알림집계현황〉처리할일〉가구 전체전출'에서 확인
 - 기급복지 전출관리 화면으로 이동하여 '가구전체전출〉 전출대기' 목록에서 전출처리
- 조사 완료 '변동알림집계현황〉인지할일〉가구전체전출'에서 확인

○ 전입지에서 할일

- '변동알림집계현황〉인지할일〉가구전체전입'에서 전입 대상 확인 후, 사후조사 등 수행

⇒ 유의사항

- ▶ 긴급지원 신청 후, 조사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주민등록상 전출이 발생하더라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자동 전출처리 되지 않음에 유의
- 즉 구 주소지에서 지원결정하고 1차 사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전출처리 되므로, 신 주소지에서는 2차 사후조사부터 실시하고, 지원중단 또는 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 중 일부가 전출하는 경우

-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 단,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핚⁷⁸⁾

⁷⁶⁾ 현장조사확인서 및 사후조사보고서 등

^{77) (}조사완료) 현장조사에서 지원결정(보장책정)이 완료 되었을 때를 의미

⁷⁸⁾ 해당 가구구성원이 다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주거는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전출지에서 할일
- '변동알림집계현황〉처리할일〉가구일부전출'에서 확인 후 '긴급복지 전출관리〉전출 대기' 목록에서 전출처리
- (가구주 전출시) 남은 가구원 지원종료 처리, 추가지원 필요 시 신규신청
- (가구주 미 전출시) 가구미분리 처리 후, 가구재구성
- 전입지에서 할임
- '변동알림집계현황〉처리할일〉가구일부전입'에서 확인 후 '긴급복지 전입관리〉전입 대기'목록에서 전입처리

(3)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긴급지원기관

-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이 2개 이상의 시·군·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긴급 지원기관은 지원요청을 한 자 또는 발견되어 신고된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됨

나. 전입

(1)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이 모두 전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또는 실시하려던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이 경우 신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현장확인을 실시

(2)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 중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련 서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지원결정
- 단, 필요 시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 6 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1.	개요	125
2.	업무처리 절차 개관	126
3	적차벽 세브내용	127

제6편

비급여진료비 불처리 심사 절차 및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치

1 개요

가. 목적

- 의료지원을 받은 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용이 요양(의료) 급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료지원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 외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용(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진료비)이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급여비용 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확인 요청 가능
- 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및 긴급의료지원을 실시한 보장기관(시·군·구청장)에 환불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고의 재정누수 방지

나. 적용시기

- 개별 진료비확인요청(요양기관 현지조사 포함): 2012, 6, 1, 이후
- 보장기관(시·군·구청장)의 진료비확인요청 : 2013, 2, 1, 이후
 - '13, 2, 1, 이후 의료기관에 긴급의료지원비가 지급된 건부터 적용

다. 적용대상

- 기급의료지원대상자의 진료비확인요청
-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시·군·구청장의 진료비확인요청
 - ※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 준수) '13. 2. 21. 이후 의료기관에 지원한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라.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 의료급여법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2 업무처리 절차 개관



○ 시·군·구청장 또는 긴급의료지원대상자가 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② 요양기관에 자료요청

○ 심사평가원은 해당 요양기관(병원)에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 요청



③ 진 료 비 확 인 심 사

○ 심사평가원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심사



④ 확 인 심 사 결 과 통 보

○ 심사평가원은 확인심사결과를 시·군·구청장,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및 요양기관에 통보



⑤ 이의신청, 심판청구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군·구청장,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및 요양기관은 이의신청
- 요양기관은 환불금 지급방법(자체환불, 공제처리) 선택



⑥ 환 불 금 지 급 (개인 및 시·군·구청장)

○ 공단 또는 요양기관은 심사결과 환불금 배분내역에 따라 긴급의료 지원대상자와 시·군·구청장에게 지급



⑦ 환 불 금 처 리

○ 지원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금액의 처리의 예에 준함

제6편

비급여진료비 불처리 절차 밀자 및

3 절차별 세부내용

① 진료비 확인요청

가. 요청 주체

- 보장기관
 - 긴급의료지원대상자가 치료받은 병·의원에 긴급의료지원비를 지급한 시·군·구청장
- 국민(긴급의료지원대상자 등)
 - 긴급의료지원대상자(환자) 본인 및 배우자
 - 기급의료지원대상자(화자)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긴급의료지원대상자와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 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 * 미성년자(만19세미만)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진료비확인 요청 가능
 -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확인요청자는 긴급의료지원대상자(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확인 요청
 - * 비급여진료비 심사를 시·군·구에 위임하지 않고 긴급의료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안내 등 이후의 행정사항은 심사평가원으로 연계 (대상자용 서식은 별첨 양식(보장기관용)과 상이함)

나. 요청 시 필요서류

- 보장기관(시·군·구)
 - 진료비(비급여) 확인요청서 【별첨1】
 - 진료비계산서·영수증(중간계산서 제외)
 -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무인날인, 자필서명) 및 인감증명서 【별첨2】
 - 무인날인 또는 자필서명 시 인감증명서는 제출 제외
 - 긴급의료지원대상자와 통보받을 자가 다른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통보(환불)받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다. 송부 기관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본원(원주)
 - 소관부서 : 진료비확인부
 - 소 재 지 :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무소 14층

라. 요청 방법

- 인터넷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진료비확인/비급여 긴급의료지원진료비 확인 요첫
- 서면
 - 우편 또는 방문, Fax

② 요양기관 자료 요청

- 진료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 비급여내역서 등 관련자료 요청 1차:10일, 2차:7일(공휴일 포함)
-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요청
 - 1차:10일. 2차:7일 (공휴일 포함)

③ 진료비 확인심사

가. 확인심사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 및 기준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및 기타 행정지시 사항
- 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지침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 의료급여법령 및 관계 법령
 - ※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건은 진료심사평가위원 심의 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

나. 심사결과 유형

- (정당)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진료비용을 산정한 건
- (환불)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진료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여 과다하게 지불한 건
- (취하) 접수 또는 검토과정에서 확인심사 처리의 중단 의사를 표명한 건
- (내부종결) 영수증 미제출, 동일 건 중복접수, 자료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검토불가, 비급여비용이 없는 경우 등

다. 화불금 배분방법

- 확인결과 발생한 화불금(과다본인부담금) 배분
 - 지원제외 항목⁷⁹⁾에 대한 금액을 뺀 나머지 비급여진료비를 긴급지원액과 환자 실제 부담액의 분담비율에 따라 시·군·구청장과 환자의 환불금 배분
 - * 지원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화불액은 화자 화불액에 포함

예시 1 ► 비급여총액 500만원, 긴급지원액(비급여) 200만원, 환자 실제부담액(비급여) 총 300만원

- 지원제외 항목의 금액(비급여 입원료 등)
- … 비급여금액 100만원
- 과다본인부담금 20만원 발생(환자 환불액에 포함)

- 지원대상금액
- ⋯ 비급여금액 400만원
- 긴급지원액(비급여) 200만원
- 환자부담액(비급여) 200만원
- 과다본인부담금 80만원 발생 (긴급지원액 vs 환자부담액 비율로 배분)
- 보장기관화불액: 과다본인부담금 80만원×50%(긴급지원 200만원/지원대상 비급여금액 400만원×100)=40만원
- 환자환불액: 20만원(지원제외항목에서 발생한 환불액)+과다본인부담금 80만원×50%(환자실제부담액 200만원/ 지원대상 비급여금액 400만원×100) = **60만원**

예시2 ► 비급여총액 200만원, 긴급지원액(비급여) 200만원, 환자 실제부담액(비급여) 없음

- 지원제외 항목의 금액(비급여 입원료 등)
- … 비급여금액 0원

➡ 과다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대상금액
- … 비급여금액 200만원
- 긴급지원액(비급여) 200만원
- 환자부담액(비급여) 0원
- 과다본인부담금 100만원 발생 (긴급지원액 vs 환자부담액 비율로 배분)
- 보장기관환불액: 과다본인부담금 100만원×100%(긴급지원 200만원/지원대상 비급여금액 200만원×100)=100만원
- 환자 환불액: 0원 +과다본인부담금 100만원×0%(환자실제부담액 0원/지원대상 비급여금액 200만원×100) = 0원
- 79)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제6편

4 확인심사결과 통보

- 통보대상
 - 확인심사 후 결정된 내용을 해당 시·군·구청장,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및 요양기관에 무서로 통보
- 통보방법
 - 우편(등기) 발송
 - 이메일 수신을 원한 경우 이메일로만 통보
- 통보내용
 - 확인결과: 환불금액. 결정사유(진료비정산내역서) 등
 -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요양기관에는 환불금 지급방법(자체환불, 공제처리, 이의신청 예정) 선택 안내

5 이의신청. 심판청구 처리

가. 이의신청

- 진료비확인요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의료급여법 제30조
 - 신청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신청 【별첨3】
 - * 단, 요양기관은 30일 이내 이의신청하여야 함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 기간 연장)

나. 심판청구(행정심판)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법 제88조 및 행정심판법 제23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제기처 :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제출

⑥ 환불금 지급

- 요양기관이 공제처리를 선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불금을 요양기관 청구 지급액과 상계처리한 후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및 보장기관(시·구·구청장)에게 확인 심사결과 배분내역에 따라 지급
- 자체환불을 선택한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진료비 확인심사결과 배분내역에 따라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및 보장기관(시·구·구청장)에 지급

7 환불금 처리

- 지원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금액 처리의 예에 준함
 - 당해연도 지원에 대한 환불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 과년도 지원에 대한 환불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처리

제6편

비급여진료비 불처리 비 절차 및

[별첨1] 진료비[비급여]확인 요청서(보장기관용) <개정 2016.8.1.>

	진료	비[비급여]확인	요청서(보장기관	· 용)
	보장기관명칭 :	:	보장기관기호 :	
	주소 및 담당부		·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확인요청하는	환불결정시 이그고나게지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보장기관	입금가능계좌 	※ 개인 계좌는 제외함		
	문자	□ 수신원함	□ 수신원치 않음	
	수신여부	※ 문자 수신을 원하실 경약	우,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로 '	알려드림.
	이메일	□ 수신원함	□ 수신원치 않음	
	수신여부	이메일 :	@	
		※ 이메일 수신을 원하실	경우, 진료비확인 관련 문서는	- 우편발송 하지 않음.
긴급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긴급지원대	상자와 동일 (긴급지원대상기	<u> </u>	□안에 √체크)
진료비 하이경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확인결과 통보받을 자	전화번호 :		휴 대 전 화 :	
84621	주 소:(긴급지원대상지) 사와의 관계:		
	은 행 명 :	· · · · — ·	예금주 :	
환불결정시 입금가능계좌	계좌번호 :			
[합금기증세화	※ 예금주는 건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통보받	을 자에 한함	
진료받은 병·의원				
보험자 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확인요청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		
구비서류	1. 진료비계산서·영수증(중간계산서 제외) 2.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무인날인, 자필서명) 및 인감증명서 - 무인날인 또는 자필서명 시 인감증명서는 제출 제외 3. 긴급의료지원대상자와 통보받을 자가 다른 경우 - 통보받을 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진료비 영수증 병·의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23조제1호에 의거 진료비확인요청 업무처리를 위하여 진료비 (약제비)계산서·영수증을 진료받은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단, 수진자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확인요청자 :	(직인)
건강보험심사	평기원장 귀	하		

진료비 영수증 병·의원 제공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O 영수증 정보를 제공받는 자 진료받은 기관(병·의원 등)
진료비 영수증 병·의원 제공에 관한 동의	O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진료비확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진료받은 기관은 진료비 영수증을 제공받아 진료비세부내역 자료를 우리원으로 보낼 때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포함)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영수증을 참고 하며, 본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O 제공하는 영수증 항목 [필수항목]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제외항목] 수진자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O 영수증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진료받은 기관은 진료비확인요청 결정사항 통보일까지 영수증 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O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받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확인요청 업무 진행시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편

[별첨2] 위임장(보장기관용) 〈개정 2016.8.1.〉

			위	임	장		
0101	성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자 택: ○휴대전화:	
위임하는	주소	()				
사람 (긴급	환 불 금	은 행 명	! :		예금	주:	
지원 대상자)	입금	계좌번호	:				
	계좌	※진료비혹	**진료비확인 결과 환불금 발생시 입금할 수 있는 본인의 계좌번호 기재				
위임 받는	보장기관 장	의			전화 번호	○사 무 실: ○휴대전화:	
사람	주소	()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의한 진료비 확인요청[요양(의료) 급여대상여부 확인 등] 위임내용						
	구분			위 임 내	용		위임함
	1	진료비확인의	오청 접수0	에 관한 사항			
0101	2	이의신청 접	기의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ㅁ				
위임	3	심판청구(행	판청구(행정심판) 접수에 관한 사항				
내용 	4	진료비 영수	증 (진료받	료비 영수증 (진료받은 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 ※ 상기 항목에 위임하시는 경우 위임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진료비 영수증 (진료받은 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3조제1호에 의거 진료비확인요청 업무처리를 위하여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진료받은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 (인감인)

- ※ 첨부서류: 위임하는 사람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주: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이 경우 "인감인"에 본인서명 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첨3] 진료비(비급여)확인 이의신청서(보장기관용) 〈개정 2016.8.1.〉

진료비[비급여]확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자	, -	명 『기관 / 『기관)			연락처		
	주	소					
신청 자		<u> </u>	국민 교요양기관	□보장기관 (혀	해당✔표시하	배주세요)	1
	성	명			생년월일		
진료비확인 결과통보서 내 용		관명칭 원 등)			문서번호		
· 特	환불급	금 총액			이의신청 금액		
	번호	금액	항목	이의신청 시	나유 및 근거		첨부서류
이의 신청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제8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자 (□국민 / □요양기관 / □보장기관) : (자필서명 또는 날인/직인)							
건강보험	넘심사당	명가원증	; 귀하				

비고: 수진자 본인이 아닌 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위임장)상 수진자가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수진자연령이 14세 미만이고 이의신청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6편

비급하여 환경진 처료리 절심시 절심시

[별첨4] 취하서(보장기관용) 〈개정 2016.8.1.〉

취 하 서 [ロ 요양기관 / ロ 보장기관용]

요양(보장)기관 명칭
요양기호 (보장기호)
연 락 처
신 청 일 자
수 진 자 성 명

□ 취하사유 (확인란 " ☑ " 해 주세요)

연번	취하사유	확인
1	중복 청구	
2	사후조사 결과부정적으로 결정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필요서류 제출 곤란	
4	위 사유 이외의 경우 구체적 사유 기재	

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취하요청자 (요양기관/보장기관) : (서명날인 및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첨5] 보완서류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보장기관용) 〈개정 2016.8.1.〉

보완서류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				
= 1	성 명	Q	<u>변</u> 락처	
확 인 요청자	생년월일			
	주 소			
人フリフし	성 명	<u>6</u>	면락처 연락처	
수진자 (긴급지원대상자)	생년월일			
(22 /2 ::0 :)	주 소			
요양기관 (병·의원 등)	명 칭			
보완 서류 요청 내용	○ 보완 요청 서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환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동의서(진료비확인 요청 및 긴급의료지원 용) □ 위임장(환불금 수령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타() ※ 진료비확인 보완요청을 받은 위 상기 서류 □에 "✓"로 표시를 해주기 바라며,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완 서류명을 직접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일자: 20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최종 제출일자는 우리 원 보완서류 요청 문서내용에 있는 최종 제출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원에서 진료비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보완서류에 대하여 제출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일 일				
	ē	· 한자본인(또는 확인요청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제 7 편

서 식

[서식 1호] 긴급지원대상자 통보서	141
[서식 2호] 긴급지원비용 청구서	142
[별지 제6호서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43
[별지 제10호서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144
[서식 3호]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서	145
[서식 4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46
[서식 5호] 고용·임금확인서	148
[서식 6호]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149
[서식 6호의 소득·재산 신고서	150
[서식 7호] 긴급지원 반환비용 납부통지	151
[서식 8호] 이의신청서	152
[서식 9호]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153
[서식 10호] 현장확인서	155
[서식 11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158
[서식 12호]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159
[서식 13호] 긴급지원의뢰서	161
[별지 제14호서식] 현장조사서	164

[서식 1호]

	□ 지원요청결과						
	긴급지원대상자 [기통보서						
	_						
-101	и н		□ 지원변경결정				
지원 대상자	<u>성</u> 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110 1	□ 긴급지원	 요청자	(근위근도:)				
		U ! 지원종류	지원금액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기간	※ 위 지원기간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선지원 기간을 의미하며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며 긴급지원대상 선정기준 적합시 2개월 범위 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80)				
지 원 결	□ 지원적합	지원안내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결정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야 하며, 지원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후조사결과 소득·총재산·금융재산 기준 을 초과할 경우 중지 및 환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지원 결정통보서 발급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까지(입원일 기준)입니다. 의료지원 결정 대상자가 동 통보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진료비용을 청구하여야 비용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		부적합사유					
· 아 내 용	□ 기 원 부적합	지원부적합 안 내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긴급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요청 하실 수 있으며, 긴급지원기준에 적합할 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긴급지	원대상자					
		변경일자					
	□ 지원변경 ·	변경내용					
	2.0	변경사유					
		변경안내 중지일자					
		중지날자 중지내용					
	□ 지원중지	중지사유 중지사유					
		중지안내					
			형, 연장 및 중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ㆍ	변 월 일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인)						
.10	<u> </u>	30 (L)					

80) 연장구분이 최초인 경우 구현

제7편

서

식

[서식 2호]

		긴급지원비용 청구서							
긴급지원	성 명	생년월일							
대 상 자	주 소	(전화 :)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의료지원	의료기관주소	(전화 :)						
	진 료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사회복지시설주소	(전화 :)						
이용지원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업 소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거지원	업 소 주 소	(전화 :)						
	거 주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료비	업 소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료비 지원	업 소 주 소	(전화:)						
- 1	제공연료 및 수량	□ 연탄 (장) □ 등유 (ℓ) □ 경유 (ℓ) □ 기타 (ℓ)							
70	청 구 금 액	금 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원법제9조 및 긴급복지법시행령제3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긴급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긴급지원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표자 (서명)									
구비서	<u> </u>	: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종류에 따라) 의료비산출내역서, 주거제공내역서, 시설이용내역서 등							

^{*}참고: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제7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6, 12,〉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화자등록번호 화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부터 까지] 야간 []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금액산정내용 급여 비급여 항목 일부 본인부담 ⑦ 진료비 총액 선택진료료 외 본인부담 진료료 본인부담금 (1)+(2)+(3)+(4)+(5)) 공단부담금 진 찰 료 ⑧ 환자부담 총액 (1-6)+3+4+5 입 원 료 신대 ⑨ 이미 납부한 금액 행위료 투약 및 조제료 약품비 ⑩ 납부할 금액 행위료 주사료 약품비 카드 마취료 본하목 현금영수증 ⑪ 납부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한계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 및 물리치료료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CT 진단료 선 택 MRI 진단료 PET 진단료 항목 초음파 진단료 보철 교정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정액수가(완화의료) 질병군 포괄수가 한계 (4) 상한액 초과금 선택진료 신청 []유 []무 요양기관 종류 [] 의원급·보건기관 [] 병원급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인] 월 항목별 설명 -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 총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을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을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 (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1과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상한액 초고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한에 보고금: 보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생활표 3 제2회에 따라 사정한 본인부담상하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나나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 본인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2합니다. ** "질병군 포괄수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의4에 따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2합니다. ** "질병군 포괄수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으로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결병구 입원진료에 대하여 해당 임원진료와 관련되는 의료핵위라도 비급여대상이나 이송처치료 등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위 표의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관에 합산하여 표기됩니다. 주(証):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2 일반사항 안내 이 계산서 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앙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제11조의3에 따라 화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신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 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장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병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지출증성)"은 당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성) "은 당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통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3. 3.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6.29.〉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영수증번호(인	면월-일련번호)								
환자 성명	조제일		<u> </u>	투약일수	-		야간(공	휴일)조	 제
						[] 야간	[]공	휴일
			급여						
항목	일브	부 본인부!	담		건	[액		비	급여
	본인부담금	크	당단부담금		본인	인부담			
약품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
4에 따른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합계	1		2		(3		(4
⑤ 약제비 총액						드			
(1)+2+3+4)		나ㅂ충	는 금액	현금역	경수증				
⑥ 환자부담 총액	uTE	!	햔	[금					
(5-2)			- DL	계					
-)			* 요양기관 임	l의활용공 [;]	간			
신분확인번호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처방한 요양기관		[]	[] 의원급 종합병원	l·보건기		병원급 급 <mark>종</mark> 합병원	<u> </u>		
사업자 등록 번호					상 호	<u> </u>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년	1	월		일	'			
항목	별 설명				일반	사항 안니	H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	으로 본인부담률은 요	양기관의	1. 야간(공	유일)조	:제 등 이 계신	l서·영수	증에 대한	· 세부니	용은 요양
종별에 따라 30% ~ 50					여 제공받을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제48조 또				
※「국민건강보험법」제413					당한 비용과 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	립니다.			경기원(☎1644·		롤페이지:	WWW.	.hira.or.kr)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	 	# 6 Œ느			실 수 있습니		// III -	7114151	ᄄᆫᄗ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_			은 「소득세법」 따른 현금영수				
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					^{떠는} 언급 87 당합니다)에 <i>시</i>				
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									
, 			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						
			영수증		_ 5 5 L-	, _	./\		
				-		1	10mmv	21∩mm/⊞	H사기 80/㎡)

148mm×210mm(백상지 80/㎡

[서식 3호]

	긴급지원	□해(대상자 □장기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긴급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1		(전화:)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성 명										
해산자											
	해 산 (예 정)일	년 월	일 일	해산원인	□출산 □사산						
	성 명										
사망자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성 명		생년월일								
전기요금 신청자	주 소										
130	고 지 서 발급기관명		신	청금액							
시장・근	고급지원대상자로서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나 직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7 비서 류 1. 해산비 신청자 - 출생증명서 1부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장제비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전기요금 신청자 - 전기요금고지서 1부											

[서식 4호]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4.1.>

[앞면]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지	나 가구 세대주 인적A	항								
관 계	r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유의사형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동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공을 동의함 ^(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¹⁾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호구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일								
그으기까자.	시요저버지즈기계지	l 기둥L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 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기초연금법」제10조「장애인연금법」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기초연금법」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3,「장애인복지법」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6,「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아동수당법」제8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7편

서

식

[서식 5호]

	고용·임금확인서										
-1	성	명				생년	월일				
피 고	주	소									
용 자	고 용 (피고용자: 구체적으	가 하는일									
ュ	<u>.</u> 용 기	 간	_	년	월	일부	터 년	월	일까지		
			이다게	1 일 임	급:					원	
			일당제	월평균 고	용일수 :					일	
							월 분	월	분	월 분	
읻	임 금 지 급 형 태월급제		기	본 급							
		월급제	각 경	증 수 당							
				기 E (여비, 치	타 금 액 남량유지비	등)					
				합 2	ᅨ 금액						
국민	<u> </u> 건강보험 기	·입여부	□ 가	입					미가입		
		상기와	같이 피고	용인이 본 시	나업장에	고용되	어 있 음을 확인	<u>!</u> 합니다.			
					년	월	일				
사 (사업 (영업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서명 또는 날인)										
7	사 업 수 명: (서명 또는 날인) ※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										

[서식 6호]

			-	긴급지원대상기	아 소 득 신.	고서				
긴급지원	성		명		생년월일					
대 상 자	주		소							
취업상태	유		량이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 자영업(노점·행상, ·						
	직장(_ (사업	장)명							
	직장(/	 나업경	장)주소			(전호	화:)	
	일	당	제	1일임금 : 월평균 근로일수 :			원 일			
월 소 득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	등이 있음을 신고합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시장·군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										

식

[서식 6호의 2] 공통서식 별지 2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4.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 · · · · · · · · · · · · · · · · · ·	-	_		- -	:니다.			
	<u> </u>	원 성명1)	1 10 0 00122		02		10 L 1 ML	1 1.			
	근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소득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사업	(주재배작물명)	()	()	()	(
	소득	임업소득	원		전 전 전 전 전		원		원 원 원 원 원		
소	·	어업소득	원		<u>원</u>		원 원		<u>원</u>		
득		기타(자영업) 임대소득	<u>원</u> 원 원 원		<u>원</u>		원 원		<u>원</u>		
사	재산	<u>임네소</u> 이자소득	<u></u> 전		<u></u> 원		<u>천</u> 원		<u></u> 원		
항	소득	연금소득	<u>전</u> 위		<u>전</u> 위		<u>전</u> 원		<u></u> 건		
		<u> </u>	면		건		건		견		
	2151	사적이전소 득	원		원		원		원		
	기타	(□무료임대)	_				-		_		
	소득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원		
					전	(지자	세 지원금등)				
	/7	건축물			원	토 지			원		
	(수택	<u>, 건물, 시설물)</u>			_	المالح الم					
		선 박 원 입목재산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자동차 □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전		
		<u> </u>	□ 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0-1-01		<u> </u>	\			
재			□ 소 (마리,	원)	분임	F권			<u>원</u> 원 원		
산			□ 돼지(마리,	원)	조합원	입주권			 원		
사		동 산	□ 기타가축(마리,	원)							
항		0 1	□ 종묘(원)	회원	l궈			원		
			□ 기계·기구류(원)	-12				٥		
			□ 기타(원)					01		
			소계 (A-(B+C+D)) (A) 일정기간3) 이내여	II ス서리기니	키버린 7	11 1 1 1 1 1 1 1			<u>원</u>		
	⊐I⊏L	산정되는 재산	(A) 일정기간3) 이대역 (B) 다른 재산의 구입	게 등억약기 <u>년</u> 그애	서군인 ^	·II선기액			<u></u> 원		
	기니	선정되는 세신	(C) 부채 상환액	<u> </u>					<u></u> 건		
			(C) 무세 8년 - (D) 의료비 등 개별기	구워이 소비형	하 글앤				 원		
<u> </u>	금	용기관 대출금	(미) 기파기 이 개교기	11 29 -1			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원 연 연 연		
부		임대보증금			ں رے	0110-11	16 -1120		 위		
채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	조서에 의한 /	나채	(— <u></u> 원)		
			□ 3개월 이상 지속적			교리 (원)		
		l구 특 성	□「자동차손해배상 <u>년</u>	보장법」에 따라	라 받은 지	l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원)		
	시	출비용4)	□ 국민연금보험료 본	인부담분의 7	75%에 하	당하는 금	액 (원)		
	01 71		□ 대학생 본인의 근	로·사업소득 증	중 월평균	등록금 지	<u> 줄 비용 (</u>		원)		
위.	와 같	이 소득·재산 내9	1 을 신고합니다.					1 -	a oı oı		
						۱۱ <u>۵</u> ۹۵۱/۲۱۱=	1712401/-	ا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ᇀ	増えら	시자•트벼지년 ㄷ	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교유가 긔칭		신청인(대리	1건성건).		(시청 또는 인)		
ľ	2/1/	<u>'''' </u>	<u> </u>	프피크 미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¹⁾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²⁾ 공적이전소득: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서식 7호]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긴급지원 반환비용 납부통지

- 1.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다음 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 됩니다.

긴급지원	성 명			생년월일			
대 상 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지원비용 난 부 자	주 소				전화번호		
납 부 자	긴 급 지 원 대상자 와의 관 계				□ 본 인 □] 기타 ()
라 나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벌	를 첨	

시장・군수・구청장(인)

 제7편

서

식

[서식 8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4.1.〉

				0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S	민 등 리국 인		번 호 번호)					
12 8 L		주	소								(건	화번호	:)
대 2	l	성	명				등 록 I 인등록번호					신청인	인과의 관계	
신 청 인	!	주	소								(건	화번호	:)
처 분	=	내	용	□ 선정		보장변경/	/중지/정지		□ 환수		□ 기타			
		을 안 연 월						년		월	일			
		를 받은 받은 연 ⁹						년		월	일			
		용 또는 통 사 항	기											
이의신청	} :	취지 및	사유											
급복지지 항,「장애(원 인연	법」제16조,	「기초연 3조,「장	!금법」제2 애아동복기	2조,「장0 시지원법_	#인복지법. 제38조,「0	,제84조,(?) 동수당법	장애인활· 」제19조,	동 지원(「사회서비	게 관현 스 이	한 법률」저	36조,대	가족지원법」저 의료급여법」자 리에 관한 법	30조제1
											년	월	일	
특별자치/	니ろ	상·특별자치	니도지시	ŀ·시장·군	수·구청	랑·교육감	귀하			신: 	청인		(서명 또	드는 인)
안 내		날로부 시·도고 다만, ② 의. 한부모 이내(단 애인홀 결정 · 하고후 30일 비스0 2. 기초성 날로부 보으로 보으로 받으로 받은 !	터 10일 고육감으 ① 기년 료급여 가족자! 단, 정당 상동지원 다 등목 2 이내, (용권 발 발확보증 방확보증 발탁자치, 합니다. 부터 15 법률에 날로부터	일 이내에 니 처분에 는연금 결정 수급권자: 원 및 정이 한 사유로 한 이의(전 이의 아동수 발급 및 특별 당 및 특별 당 이내이 입 규정이 입 터 90일 이	이의신청 대한 이의 라이 대한 의 자격, #인복지 : 인하여 난 날로부 신청은 15 등에 디 당지원은 상위계층 상위계층 상위계층 상위계층 성우 이의신청	에 대한 의 시신청은 특 이의신청은 의료급여 의의신청을 이의신청을 터 60일 이내(단 한 이의신 확인서 ' 라 및 시 ' 원 관련 이 니다. 「사회보장	기견서와 관 특별자치시 은 접수한 및 급여비 청의 경우 한 할 수 없이내(30일 한 분류한 설무부터 3 당로부터 3 당고교육감약 의신청의 당급여의 0 당한 보장기	관계서류를 장·특별기상·특별기 생각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를 첨부하 사치도지시 30일 이 한 이의산 일 이내, 명한 때에 네 연장기, 있는 경우 부터 60% 특별한 사 니내 결정통 도지사는 고지사는 및 수급	여 시·사 나 및 사 내(단,) 성 실 (관) 장이는 (관) 장이는 (관) 이 등이 있는 (관) 이 의 (관) 이 의 (관) 이 의 (관) 이 의 (관)	도지사(특별) 나 도교육 2 특별한 사 60일 이내 배인연금 결사유가 소말이나, 장애아동 60일이내), 영 영유다 분 경우에 리합니다. 그 청중을 받았나 구청장으 발굴에 관한 보다 생각 보다	별자치시 ())에게 등 우가 있는 (30일 년 정 등에 명한 때부 자족지원 한보육지 는 60일 로부터 을 로부터 난 법률과	(*)이 이의신청 상·특별자치! 송부합니다. 글 경우에는 6 범위 내 연장 대한 이의신: 라더 60일 이나 년, 장애아가르 달장애인 주간 원은 접수한 일이내)이내,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30* 이의신청을 : 제17조에 의해	도지사 및 50일이내), 가능), ③ 형은 15일 배, ⑤ 장 등양육지원, 발로부터 ⑩ 사회서 를 받았을 이내에 송부 받은 태 처분을
구 비 서 류		2. 신청(3. 위임(- 0 . 인의 인	적사항을 내리인의	확인할	있는 서류 수 있는 사 을 확인할	네 류	서류(기	초연금관련	변 이의	신청을 대	리하는	수수 경우 없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9호]

		긴급	급지원디	l 생자	사후조	사 보고	.서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제1호	호 주소득자(主	所得者)人と	낤·가출 등의 사	유로 소득 상실	<u> </u>	
		□제23	호 중한 질병 .	또는 부상		□제3호 기	구구성원으로부	터의 유기·방임·학대
		□제43	호 가구원의 기	├정폭력·성=	폭 력	□제5호 화	내 또는 자연재하	1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위기발생사유	□ <u>제63</u>	호 주소득자 또	는 부소득	사의 휴·폐업	□제7호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11/1월 경시ㅠ	□제83	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제9호 보	건복지부 고시	사항(이혼)
		□제9호	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단	<u>난</u> 전)	□제9호 보	건복지부 고시	사항(출소)
		□제93	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노	-숙)	□제9호 보	건복지부 고시시	·항(복지사각지대발굴)
		□제93	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통	등합사례관리)	□제9호 보	건복지부 고시	사항(자살고위험군)
	지원종류					지원내용		
	긴급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긴급지원 대 상 자	가구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율	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 건축	 :물	(원)	□주택	(원)
		□ 토지		(원)	□임차보증금	(원)
	일반재산	□ 선박	t/항 공 권	(원)	□동산	(원)
	a 전세선	□ 어입	검권	(원)	□입목재산	(원)
재		□ 조현	t입주권	(원)	□분양권	(원)
		□ 회원	권	(원)	□기타(증여)	(원)
산		□ 평기	 액	(원)	□차종·연식	()
[^건	자 동 차	□ 차량	·번호	()	□소유자	()
		□ 배기		(cc)	□용도	()
사	금융재산	□ 기티	l(증여)	(원)	□금융재산	(원)
'	10°11C		·일시금	(원)			
			· 민가구	(원)	□자연감소분	(일반) (원)
항	공제	□ 장기		(원)	□생활준비금	(원)
			년감소분(금융) -	(원)			
	부채	□ 대출		(원)	□임대보증금	(원)
		□ 개인	<u>l</u> 간사채	(원)			
	총합계				원			

(뒷면)

-17-101	소득	※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의 100분의 75 이하							
긴급지원 적 정 성	재산	※ 대도시:188,000천원, 중	· - - - - - - - - - - - - - - - - - - -	101,000천원							
판단자료	금융재산	※ 판단기준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연장, 변경 및 중지	□ 지원연장	□ 지원중지	□ 지원변경							
사후조사 결 과	담당자 의 견										
긴급복	부지지원법제13.	조에 따라 위와같이 긴급지원다	l상자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 <u>.</u>	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지	사 직 위		성명	(서명)							
확 인 ス	가 직 위		성명	(서명)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귀하										

(1/3)

		됩	7L 2	šL OI		1.1		처리	기간
		현	성 -	확 인	,	Ч		지초	ll없이
지원요청 또는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고 <u></u> 신고인	주 소			,					<u>'</u>
위기발생 사유	□ M3 \$\bar{2}\$ □ M5 \$\bar{2}\$ □ M9 \$\bar{2}\$ □ M9 \$\bar{2}\$ □ M9 \$\bar{2}\$	가구구성원. 화재 또는 <i>i</i> 주소득자 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으로부터의 유 자연재해 등으 는 부소득자의 고시사항(이용 고시사항(출소	호) <u>의</u> 기사각지대발굴	<u> 곤란</u>		제2호 중한 질병 제4호 가구원의 제6호 주소득지 제8호 지방자치 제9호 보건복지 제9호 보건복지 제9호 보건복지	가정폭력·성· 또는 부소득: 단체의 조례로 부 고시사항(! 부 고시사항(!	자의 폐업 ³ 정한 사유 단전) 노숙)
	대상자 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긴급지원									
대 상 자									
	건축물/주택	□ 건축물	(원)	□주택	(원)
	토 지	□ 논 □ 임야	(원) 원)	□ 밭 □ 기타	(원) 원)
개	선 박	□선박	\	대	(:		\	원)	<u> </u>
711		· □ 평가액	("	` 원)	□ 차종·		<u></u>)
	 자 동 차	○ □ 차량번)
4.1		□배기량			cc)	<u></u> 8도	. ()
산	01-11.17-7	□ 전·월시	세보증금 (원)				
	임차보증금	_ 상가보			원)	□기타	(원)
		□ 은행예	금·적금(원)	□ 저축성	·보장성보험 (원)
사	금융재산	□주식	(원)	□ 현금…	수표·어음등 (원)
		□청약저	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원)			
		□소	(원)	□돼지	(원)
항	동산	□기타가	·축 (원)	□회원권	<u>l</u> (원)
	- 공 선	□종묘・임	임목 (원)	□기계・	기구류 (원)
		□기타	(원)				
	부채	□ 임대보	증금 (원)	□ 일반누	<u></u> .		원)

(2/3)

유의사항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동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합니다. 나.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또는 위 사항을 고지한 긴급지원담당 : (서명 또는 인)
현강확인 내용	

	□ عاداتا ۵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필요	□ 그밖의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 국민기초수급:	자		□사회복지공	동모금회	
		□ 보건소(암, 희·	귀난치성질환 등)		□지자체자체	지원사업	
	□타지원연계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대한적십자	\	
현장확인 내용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기타			□차상위 의료	로비 경감대상자	
		□ 위기상황비해당	당		□소득기준초	과	
	□지원불필요	■총재산기준초과	가		□동일사유의	기지원	
	█시전달글프	□ 금융재산기준초과			기타		
		타지원연계					
지원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지원통장 계좌	번호 사본 1부	'				
	9	l와 같이 긴급지 [.]	원요청 및 신고어	대하여 현장·	을 확인하였습니	[다.	
년 월				월		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 현장확인자: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1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5.6.2.〉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접수번호	2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	일	
(지원대상자)	주 소		(전화 :)
긴급지원	금융기관		예금주		
수급계좌	계좌번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좌번호가 표시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처 리 절 차 계좌번호 등록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m^{*}(재활용품)]

[서식 12호]

■ 서면 서식〈신설: 2015.7.1.〉

제 호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주소(소재지):						
4. 긴급지원 종류 구분: 						
[] 생계지원 대상자 [] 의료지원 대상자 [] 주기 [] 교육지원 대상자 [] 그 밖의 지원()	거지원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5. 제출용도 : (용 도) (제출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 긴급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구인 직인					
※ 유의사항: 목적외 사용 금지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제7편

서

긴급지원대상자 접수 및 지원 대장

	山江							
		해산비						
	밖의 지원	장제비 해산비						
원)	計口	전기 요급						
실시 내역(금액, 욕		थि हा मी						
후	o F	실 사 왕						
지원 실시	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7 12	- 전						
		부						
		· 주 · 광						
	중	TH.						
	ス 学 多							
	(전 ()	E						
	点 为 与							
	소송	E						
	결정일							
	활章							
	をよる	m <						
1청)인		华河						
신고(신청)인		太。 品。						
		<u>-</u> જ						
사자		상세주소						
긴급지원대상자		응 89 아						
1/2		- 된 어						
		天 면 면						
	N N		軍					

[서식 13호]

	긴 급	급 지	원 의 료	네 서	신청구분	I			발굴대상자 사살고위험군
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u> </u>	전호	화번호		
- 청 인	거주형태								
Ľ	주	소			휴대전	화			
	세대주와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학력·개학여부	건강상태	취업	상태	전화번호
_,	의 관계	성명	수인등록인호 (외국인등록번호		(학교명/학년반)	(장애/질병)	직업	직장명	(집/직장)
가 족									
사									
항									
	※ 배우지	L ŀ 관계 ([] 법률혼	 사실혼 □ 시	 실상 이혼)				
지 원 이 력	□시설입:	활보장(기간 소(시설 종 류	- :	,) 시설명 :)
71	□기다(돌 건축물	!시보호시설 :}/주택	교건축물(원) D	 주택(·	원)			
	토		 □논(원) □밭(원) □임		원) 🗆]기타(원)
	선	박	□선박 C	H(원)					
재	자동	통차	□평가액(원) □차종·연식()(원) □차량번호() □소유자() □배기량(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산	임차5	^{본증금}	□전·월세보증	금(원	!) □상가보증	금(원)[□기타(원)	
사 항	급융	재산	□은행예금·점 □주식(□현금·수표·	l금(원 원) 거음등(원	-,			<u>4</u>)	
	동	산	□소(원 ₎ □종묘·임목(□돼지(원) □기		·축(원 원) □기E		원권(^일)	원)
	부	채	□임대보증금(원) □일	반부채(원)			

	〈현재 생활실태:가구이탈사유, 소득활동, 재산사항, 지원요청내용, 구직활동 노력 등 포함〉
본 인 진 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동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유 의 사 항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자 합니다. 나.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상 담 자 의 견	〈상담내용 : 필요지원니	#용(생계·주거지¦	원 등), 향호	후 관리병)안, 연장지원 필요	성 등〉			
					상담자 :		(서명	또는	인)
	위의 상담내용어	따라 본 대상지	에 대한 긴	<u>!</u> 급지원	(신규지원/연장신청)을 의뢰합	니다.		
		Ļ	크	월	일				
0	○ ○ 시장(군수/구	¹ 청장) 귀하			기관장 또는 부서?	아			(인)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1			

제7편

서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6.6.30.)

	현 장 조 사 서				
조사 대상	(성 명) (생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조사 목적	긴급복지지원 신청자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조사 기간	20 부터 20 까지				
조사 담당자	소속: ○○ (시·군) ○○과 직급: 사회복지 ○급 성명: ○○○				
조사의 범위	○ 위기상황 발생 사유 ○ 소득·재산 사항 등 지원기준 판단 자료 ○ 그 외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 일체				
관계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8조(현장확인 및 지원)				
제출자료	○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기타 위기상황 확인 및 지원결정에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				
기 타					
	년 월 일				
	기 관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록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167
□ 고시 개정사항	190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90
- 금융재산 기준	192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93
〈참고1〉 노숙인 시설 현황	195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 정 2005.12.23, 법률 제 7739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일부개정 2009. 5.28, 법률 제 9751호 타법개정 2010. 1.18, 법률 제 9932호 타법개정 2010. 4.15, 법률 제10261호 타법개정 2011. 7.14, 법률 제10854호 일부개정 2012.10.22, 법률 제11512호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934호 일부개정 2015.12.29, 법률 제13644호 일부개정 2015.12.29, 법률 제13644호 일부개정 2016.12. 2, 법률 제15878호 일부개정 2019. 6.12, 법률 제15878호	제 정 2006. 3.23, 대통령령 제19397호 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4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9호 일부개정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9호 일부개정 2009. 5.28, 대통령령 제21508호 타법개정 2009.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일부개정 2012.12.28, 대통령령 제24282호 일부개정 2012.12.28, 대통령령 제24282호 일부개정 2012.12.28, 대통령령 제24282호 일부개정 2013. 6.28, 대통령령 제24648호 일부개정 2015. 6. 1, 대통령령 제26296호 타법개정 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2016.1.22, 대통령령 제28946호	제 정 2006. 3.24, 보건복지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타법개정 2008. 3. 3, 보건복지기족부령 제 1 호 일부개정 2009. 5.28, 보건복지기족부령 제113호 일부개정 2009.12.31, 보건복지기족부령 제144호 타법개정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일부개정 2013. 1.31, 보건복지부령 제178호 타법개정 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일부개정 2015. 6. 2,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타법개정 2016.5.25., 보건복지부령제403호 일부개정 2018.8.17., 보건복지부령제588호 일부개정 2019.6.11, 보건복지부령제62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 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 10.22,2014.12.30.,2018.12.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 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 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 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 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6.11〉 1. 기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을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 [시행일: 2019. 6. 12.] 제2조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전문개정 2009.5.2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 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 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 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 용·절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 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 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 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9.5.28]	제1조의2(간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 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 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5.28]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09. 5. 28.] [시행일: 2019. 6. 12.] 제6조		제2조(간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시장 (계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수 있다. 〈가정 2015.6.2〉①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예산 확보 현황및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전문개정 2009.5.28]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 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 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 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 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 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경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형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있는 자로서 보건복자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있는 자로서 보건복자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기관의 강의 그용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수있는 자로서 보건복자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기관의 강의 그용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수있는 자로서 보건복자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기관의 강의 그용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수있는 자로서 보건복자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기관의 강은 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		의 직원 3.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본조신설 2015.6.2.]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전문개정 2009. 5. 28.] [시행일: 2019. 6. 12.] 제7조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 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 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 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 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 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 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투
시행령·시행규칙	71日与 天 天 紀世・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4.12.30]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 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 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 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 정 2014.12.30〉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 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 다. 〈개정 2015.12.29〉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5.12.29〉 [전문개정 2009.5.28]	제7조(사후조시의 시기 및 기준) ① 시 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2013.6.28, 2015.6.1〉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이어야 한다.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전문개정 2009.5.28]	제2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8조제4항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5.25][종전 제2조의4로 이동〈2016.5.25〉]

기급복지지원법 기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기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9조(서식) ① 제2조의3에 따른 현장 세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 **제출)** ①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 조사서,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 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인할 때에 그 긴급지워대상자 및 기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 다. 〈신설 2015.6.1〉 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 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 1 의식불명인 경우 정 2016 5 25〉 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 ②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 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에 따른다. 〈개정 2018. 8. 17.〉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워담당 아동인 경우 [전문개정 2015 6 2]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②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 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2018.6.5.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 정보"라 한다) 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 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납입액 "신용정보"라 한다)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 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 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 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하다) 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 [본조신설 2009.5.28] 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 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 액 또는 최종 잔액 ③ 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④ 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09.5.28] [제목개정 2015.6.1]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제2조(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 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6.1.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2. 민간기관·단체외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의 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한도로 한다. 〈개정 2012.10.22, 2015.12.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 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 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조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금액을 해당의료서비스를 제공한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10.3.15〉[전문개정 2009.5.28.]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간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 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제공 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10.3.15〉[전문개정 2009.5.28.]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 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 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 어 지급한다. 1.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본조신설 2009.5.28.]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 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중 법 제2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4.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궁등과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중학교· 공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6.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중학교,구등학교의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 비및 학용품비등(이하 "학비"라한 단기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	

부록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등을 현물로 지급할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신청일이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10.3.15〉[본조신설 2009.5.28.]	
	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 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10.3.15〉 [전문개정 2009.5.28]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 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 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 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 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 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 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 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 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 리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절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7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 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 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 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 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 우를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금 을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 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 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 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제3조(지원연장 결정) 시장·군수·구청 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 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 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 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9.5.28]		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 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 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 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 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 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등 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삭제〈2012.10.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 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사 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 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 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 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 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 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5.28.]
는다. 〈개성 2015.7.24〉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 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수당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 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 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기급복지지원법

기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기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 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급지원이 적 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 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8조 의2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 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 시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 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 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 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7.14>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 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 야 한다.

제13조(사후조사) ① 시장·군수·구청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 **제7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 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 후조사를 마쳐야 하다 다만 사후조 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 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1〉

-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라다음각회의 외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2013.6.28, 2015.6.1>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 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이 어야 하다.
-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 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 이하일 것
-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 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 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 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 1 31 >
-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 등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다
 -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2. 사업소득
 -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 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 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 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 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 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野生 鳥獸)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 에서 얻는 소득
 -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따른 업 무에서 얻는 소득
 -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 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 서 얻는 소득
- 3. 재산소득
 -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및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 하는 소득
 -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 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기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기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 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 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4.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2010 3 15. 2012 12 28>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밖의 금품 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 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로 보지 아니하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 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 정 2011 7 14〉 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 금품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 여야 하다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 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와 유사한 금품 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등의 명칭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⑦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 4. 금융정보등의 내용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개정 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2010.3.19.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 [전문개정 2009.5.28.] 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 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 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용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 **제8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⑧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 있다. 〈개정 2010.3.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 용정보등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 필 [전문개정 2009.5.28]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 [전문개정 2009.5.28] 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 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

라.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

동차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 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국채・공채 등 유가증권나. 예금, 작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법 제56조 주택청약종합저축과「보험업법」 제4조제1항각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한나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은 법제13조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5.6.2〉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긴 급복 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 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차종·정원·적재 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제1항제1호라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제1항제1호라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제1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1.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납입한 금액 8. 제1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2호: 영제1조의3제2항및 제4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기액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제 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 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6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③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5.28]		

ㅂ	로
1	_

시행령·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09.5.28]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u>454,900</u>	<u>774,700</u>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역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중 소 도 시	290,300	422,900	557,400
	183,400	243,200	320,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부록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u>700,000</u>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천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88,000	118,000	101,000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고시에 대하여 <u>2020년</u>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재산 기준

1.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1. 3.〉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2.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 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 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7. 삭제
- 8.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9.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10.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다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1.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u>제394호</u>)에 따라이 고시에 대하여 <u>2020년</u>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126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장애등급 제1급 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은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참고1

노숙인 시설 현황

□ 노숙인 재활시설(34)

🔟 법인시설(31)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늘푸른자활의집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031-953-3491 031-953-3490
	목동의집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남로16 나길 62-1	02-2642-7665
서울 (5)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02-2243-9183 02-2243-9188
	아가페의집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17	02-942-9193 02-942-9194
	우리집공동체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9 바길 14-1	02-918-3569 02-916-0392
부산	오순절평화의마을 희망의집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53	055-352-4241 055-351-1984
(2)	인성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1870-63	055-375-1797 055-375-7588
대구 (1)	<u>대구시사회서비스원</u> <u>희망마을</u>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원읍 명천로 58	053-632-1229 053-635-3316
인천 (1)	은혜의 집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32번길 22(심곡동)	032-562-5101 032-562-5108
광주 (1)	<u>광주희망원</u>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용산동)	062-234-9279 062-234-9277
 대전 (1)	자강의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2(대화동)	042-620-8950 042-620-3136
세종 (1)	금이성마을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솔티로 293	044-862-7004 044-862-7051
	가평꽃동네 요한의 집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꽃동네길 53-37	031-589-0109 031-589-0209
경기 (3)	성경원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3208번길 43-22(하봉암동)	031-865-2490 031-867-2923
	성혜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120번길 46-29	031-358-9395 031-358-9397
	강릉시립복지원	강원도 강릉시 진재골길 12-14	033-648-7824 033-648-0272
충북	성덕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호	043-253-4761 043-253-4762
(2)	음성꽃동네 노숙인재활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0-55	043-879-8552 043-879-8555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전북	신애원	전북 군산시 새터길 20 (구암동 63-21)	063-445-1782 063-445-3782
(2)	이리자선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6길 9-17(신용동 75-2)	063-855-7672 063-854-1598
	진성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101	061-280-6510 061-280-6516
	동명원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로 211-35	061-452-5514 061-452-6570
전남 (5)	금강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1081	061-686-5580 061-686-5582
	인애원	전남 순천시 매봉길 30	061-721-1565 061-723-4124
	해남희망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91	061-536-3640 061-535-1385
경북 (1)	고령들꽃마을	경북 고령군 우곡면 우곡강변길 516-16	054-956-9800 054-956-0052
	<u>진주시복지원</u>	경남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 98번길 34-13	055-762-7620 055-762-1923
경남 (3)	창원시립복지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북 8길 6	055-256-0079 055-293-0269
	합심원	경남 사천시 삼상로 613(이홀동)	055-835-8557 055-835-8579
제주 (2)	서귀포시사랑원	제주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서홍동)	064-763-5551 064-763-5561
	제주시희망원	제주 제주시 아봉로 451(월평동)	064-721-0711 064-721-0714

🔟 개인시설(3)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3)	그리스도의공동체 겨자씨들의모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 21길 10	02-999-3932 0505-900-3932
	수선화의집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남로16나길 62-1	02-2644-0713
	십자가쉼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6 가길 24-1	02-941-2503 02-941-2510

[※] 노숙인재활시설 중 국비에서 관리비만 지원(★)하는 시설 3개소, 국비 미지원(☆) 시설 4개소

/^{참고1}〉 노숙인 시설 현황

부록

□ 노숙인 요양시설(22)

🔟 법인시설(17)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립은평의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02-3156-6315 02-354-4205
	서울특별시립영보자애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031-333-7390 031-333-7392
서울 (5)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02-3412-4503 02-3412-4512
	다일작은천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	02-2213-8004 02-2242-7004
	마더테레사의집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2길 20	02-3216-2431 02-3216-1566
부산	마리아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298	051-263-3902 051-263-3925
(2)	오순절평화의마을 사랑의집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53	055-352-4241 055-351-1984
대구 (1)	<u>대구시사회서비스원보석마을</u>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58	053-267-4400 053-267-4402
경기 (1)	가평꽃동네 사랑의집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꽃동네길 53-37	031-589-0109 031-589-0209
 강원	춘천시립복지원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1925-25	033-261-6901 033-262-2335
(2)	<u>원주복지원</u>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0	033-747-1795 033-747-6996
충북 (1)	<u>음성꽃동네 노숙인요양원</u>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39-16	043-879-0250 043-879-0209
전북 (1)	전주사랑의집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호성동2가 631-13)	063-253-8393 063-253-5522
전남 (1)	기쁨원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신평길 79-14	061-382-0626 061-383-0565
경북	나자렛집	경북 영천시 화산면 가일길 143	054-335-0125 054-335-0122
(2)	포항들꽃마을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293	054-262-9093 054-262-9095
경남 (1)	새삶의집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667-7	055-574-3633 055-574-7544

개인시설(5)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1)	임마누엘의집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76-14	02-909-2912 02-909-2911
부산 (1)	사랑의선교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 5번길 134-9(부곡동)	051-518-8425 051-512-5054
인천 (3)	다사랑의집 ★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11번길 34-10(숭의동)	032-886-8780 032-889-8780
	한무리홀리라이프 ☆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19번길 15(숭의동)	032-881-5777 032-889-3777
	광명의집 ☆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6번길 7-4(석남동)	032-576-3347 032-581-4424
전남 (1)	해남겨자씨공동체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서산길 231	061-536-0202 061-536-0203

[※] 노숙인요양시설 중 국비에서 관리비만 지원(★)하는 시설 3개소, 국비 미지원(☆) 시설 6개소

소참고 1 〉 보숙인 시설 현황

□ 노숙인 자활시설(56)

법인시설(39)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립24시간 게스트하우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25	02-2215-9251 02-2215-9254
	강동희망의집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23길7	02-2041-7851 02-475-4588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1	02-312-7225 02-3147-2321
	구세군가재울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1 다길 2	02-309-3009 02-6442-2031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58길 20	02-313-1991 02-365-7228
	길가온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나길 14	02-891-5732 02-891-5731
	대한성공회살림터	서울특별시 관약구 국회단지길 67	02-875-3474 02-875-3490
	보현의집(시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02-2069-1600 02-2069-1606
서울	수송보현의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31길 22-7	02-737-4894 02-737-4896
(18)	<u>애원희망홈</u>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	02-3421-2707 02-3421-0124
	아침을여는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0길 19	02-924-1010 02-924-1018
	양평쉼터(시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031-775-4940 031-773-4961
	열린여성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66-10	02-704-5395 02-704-5514
	천애원 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7-7	02-952-4564 02-6442-4568
	청담광명의집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29길 36	02-806-1377 02-805-8345
	화엄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7길 75	02-2642-1363 02-2642-7272
	희망나무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2길 37-4	02-846-3070 02-2675-0643
	흰돌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7가길 12	02-372-5905 02-372-5915
부산 (3)	금정희망의집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40(서동)	051-526-1033 051-526-1066
	금정내일의집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73번길 30-4	051-995-1077 051-995-1080
	화평생활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50번길 15	051-412-0191 051-412-3945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대구	성프란치스코의집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7길 40	053-253-1313 053-255-4861
(2)	동대구노숙인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4길 36	053-742-0353 053-742-0354
인천	<u>내일을여는자활쉼터</u>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29-35(계산동)	032-544-6330 032-549-0229
(2)	<u>무등노숙인쉼터</u>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두암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3층)	062-262-7481 062-268-0094
광주 (1)	무등노숙인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두암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3층)	062-262-7481 062-268-0094
	울안공동체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 3층(정동)	042-252-5255 042-252-5257
대전 (3)	성바우로의집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130번길 53 정우빌라 A-401(가양동)	042-635-3186 042-635-3184
	파랑새둥지	대전광역시 동구 역전4길 32(정동)	042-221-8334 042-221-8330
울 산 (1)	울산광역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87(신정동, 부영빌딩 2층)	052-247-8323 052-223-1366
	성남내일을여는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55-8	031-745-9356 031-745-9560
경기	안나의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9(하대원동)	031-602-6033 031-751-9050
(4)	해뜨는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75번길 130(정자동)	031-257-3015 031-257-3153
	안양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71(안양동)	031-446-0990 031-465-0993
 강원	다시서는집	강원도 원주시 가매기길 18-12	033-747-4932 033-766-4935
(3)	원주노숙인센터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50	033-746-1206 033-744-4259
충북 (1)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2(신봉동)	043-276-9697 043-276-9698
충남 (1)	천안희망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2길5	041-553-9154 041-553-9155
 전북	전주일꾼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5-70 휴먼빌 2동 301호(평화동1가 454-6)	063-245-9004 063-245-9005
(2)	전주희망의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추천1길 27-1 팔복5 301호 (팔복동2가 137-4)	063-272-9199 063-273-9199

💟 개인시설(18)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가나안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3길18	02-964-1558 02-965-4165
	광야홈리스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3	02-2636-3373 02-2068-7254
서울 (5)	내일의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0길2-1	02-497-6333 02-461-6251
	두레사랑의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14	02-2635-8390 02-2635-8391
	소중한사람들(남성)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02-365-9106 02-365-9104
	새살림공동체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3길 12-1	053-257-0691 053-257-0607
대구 (3)	살림커뮤니티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17	053-425-0696 053-425-0694
	제일평화의집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28길1	053-356-9113 053-358-9118
인천 (1)	능력교회사회복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66번길 9-5(간석동)	010-7795-9191
 대전 (1)	아곱의 집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95(산성동)	042-586-9393 042-586-9394
	마중물비전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37번길 37(교동)	031-254-2110 031-254-2118
	새희망의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244번길 15-7(인계동)	031-233-8989 070-7539-9669
	실로암교육문화센터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191번길30(상동),2층	032-329-3164 032-329-3167
경기 (7)	희망의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7번길 38-9(평동)	031-296-4740 031-294-4740
	베다니마을뜨란채쉼터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465번길23(신천동)	070-8818-6964 031-311-6967
	이레자활공동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대평평장길 69	031-775-1972 031-775-1339
	작은자의마을 벧엘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11, 501호(이동)	031-417-7191 031-775-3196
경북 (1)	브니엘의아침	김천시 부곡동 부곡시장길 16-3	054-437-7712 054-437-7713

□ 노숙인급식시설 현황(4)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2)	참좋은친구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7	02-754-0031 02-312-8295
	살맛나 는공동 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9	02-707-0944 02-707-0954
경기 (2)	안나의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9(하대원동)	031-756-9050 031-751-9050
	사랑마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91, 2층(태평1동)	031-722-1026 031-722-1025

□ 노숙인진료시설 현황(3)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2)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9-2	02-777-1145 02-777-5394
	영등포 노숙인 무료진료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1	02-2069-1604 02-2069-1606
부산 (1)	사랑그루터기진료소	부산광역시 동천로 108번길 14(전포동)	051-441-5662 051-463-1128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10)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6	02-777-5217 02-777-5393~4
(2)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363-9199 02-363-9198
부산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3-9(초량동)	051-463-7707 051-463-7707
(2)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전포동)	051-463-1127 051-463-1128
대구 (1)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053-426-5828 053-423-6243
대전 (1)	대전광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시 동구 대전로 839번길 75, 3층(중동)	042-221-8331 042-221-8330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031-751-1970 031-751-1971
경기 (3)	수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6(고등동)	031-238-8579 031-236-4979
	<u>의정부시희망회복</u> <u>종합지원센터</u>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031-846-4232 031-846-1660
제주 (1)	희망나 눔종 합지원센터	제주시 중앙로 3길 35	064-753-0711 064-753-0712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9)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옹달샘드롭인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94길 6	02-2068-9113 02-2672-9113
서울	인정복지관만나샘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45	02-757-7595 02-757-7597
(4)	햇살보금자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41-16	02-2636-8182 02-2636-8183
	디딤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6길 7	02-332-5515
대구 (1)	징검다리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053-426-0231 053-423-0232
대전 (1)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224(정동)	042-221-8332 042-221-8332
경기 (1)	의정부시 희망회복일시 <u>보호소</u>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031-846-4232 031-846-1660
강원 (<u>2</u>)	노숙인일시보호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1925-25	033-264-6901 033-262-2335
	<u>원주시 노숙인일시보호소</u>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0 (원주복지원 내)	033-747-1795 033-747-6996

□ 쪽방상담소 현황(10)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5)	창신 동쪽 방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0라길 31	02-3672-1264 02-3672-1266
	남대 문쪽 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9	02-778-1290 02-757-4136
	돈의 동쪽 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돈화문로9가길 20-2	02-747-9074 02-747-9073
	서울역쪽방상담소	<u>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35-15</u>	02-771-6591 02-3789-5991
	영등포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23-2	02-2068-4353 02-2068-7254
부산 (2)	동구쪽 방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31(수정동)	051-462-2017 051-462-2018
	부산진 구쪽 방상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3(전포동)	051-807-5663 051-807-5664
대구 (1)	대 구쪽 방상담소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47길 13-3	053-356-3494 053-356-3496
인천 (1)	<u>인천쪽방상담소</u>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1(계산동)	032-543-6330 032-544-8348
대전 (1)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 2층(정동)	042-252-8394 042-252-8395

제 작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Homepage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지침과 관련된 질의는 먼저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